

- 발표 하 며 -

학생인권이 우리 사회의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다. 학생인권 운동, 특히 2005년부터 광주에서 시작된 학생인권조례 제정 운동이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제정이라는 결실을 맺었고 서울을 비롯하여 전국 여러 곳에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서울을 시작으로 체벌금지 조치, 학칙 개정 조치 등이 여러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기도 하다. 이에 대해 많은 학생들이 환영하고 있으며 여러 교육시민인권단체들 또한 지지를 보내고 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학생인권 보장에 대해 우려를 보내거나 부정적인 의견을 부각시키는 측도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 전교조 참교육연구소는 학생인권과 학생인권조례에 관해 수도권 학생, 학부모들 그리고 전국 교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 결과, 학생, 교사, 학부모들은 대체로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져야 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일부 언론과 단체 등이 제기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우려들에 대해서는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 학생인권과 교권이 대립하는 것이라는 인식 또한 잘못된 면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밖에 전반적으로 의미 있는 결과들이 나왔다. 학부모들은 학교가 입시기관이기보다는 학생들의 인생과 가치관에 도움을 주는 기관이길 바란다는 경우가 많았으며, 더 나은 학교를 만들기 위한 과제로 ▲민주적 참여 보장 ▲입시경쟁 교육 해소 ▲교육시설 및 환경 개선 ▲교사의 업무 경감 및 지원 강화 등이 꼽혔다. 이러한 조사 결과가 앞으로 학교 교육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알려주는 작은 실마리가 되길 바란다.

1. 학생인권조례 제정 필요성

○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여 학생인권을 보장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학생)

	매우 필요하다	필요하다	그리 필요하지 않다	전혀 필요없다	모르겠다
학생	53.0%	35.6%	3.2%	2.0%	6.3%
학부모	26.6%	61.0%	6.8%	0.9%	4.8%
교사	45.8%	42.9%	8.3%	1.5%	1.4%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학생, 학부모, 교사들에게 모두 물었다. 학생들은 "매우 필요하다"라고 답한 사람이 53.0%로 그 필요성에 큰 공감을 보였다. 교사들 중 학생인권조례의 필요성에 동의한다고 답한 사람은 88.7%, 학부모는 87.6%로 역시 대다수가 학생인권조례의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다.

○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우려에 얼마만큼 동감하는지

"학생인권은 학교에서 알아서 잘 보장할 수 있으며 학생인권조례 같은 제도는 불필요하다."				
	매우 동감한다	대체로 동감한다	별로 동감하지 않는다	전혀 동감하지 않는다
학생	4.2%	15.1%	34.4%	46.2%
학부모	3.8%	26.3%	46.5%	23.5%
교사	1.7%	11.3%	34.6%	52.3%
"인권을 보장하면 학생들을 통제할 수 없어 학교폭력이 늘어나게 된다"				
	매우 동감한다	대체로 동감한다	별로 동감하지 않는다	전혀 동감하지 않는다

학생	8.1%	28.6%	35.2%	28.1%
학부모	6.3%	36.6%	39.8%	17.2%
교사	4.5%	13.4%	34.8%	47.3%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면 보충수업과 자율학습을 하지 않아 사교육이 늘어나게 된다"				
	매우 동감한다	대체로 동감한다	별로 동감하지 않는다	전혀 동감하지 않는다
학생	8.0%	29.5%	34.4%	28.1%
학부모	7.7%	35.3%	43.6%	13.4%
교사	2.5%	12.5%	35.0%	50.0%
"학생인권을 보장하는 것은 교육을 포기하는 것이다"				
	매우 동감한다	대체로 동감한다	별로 동감하지 않는다	전혀 동감하지 않는다
학생	4.0%	9.4%	25.7%	61.0%
학부모	2.9%	14.9%	44.7%	37.4%
교사	1.4%	5.1%	24.6%	68.9%
"학생인권을 존중하면 교사의 권리와 노동환경이 나빠진다"				
	매우 동감한다	대체로 동감한다	별로 동감하지 않는다	전혀 동감하지 않는다
학생	6.4%	17.8%	33.2%	42.6%
학부모	4.0%	21.2%	48.2%	26.7%
교사	3.7%	13.7%	35.1%	47.5%

학생인권조례와 관련해서 제기되고 있는 몇 가지 우려의 내용들에 대해 얼마나 동감하는지 물었다. 그 결과 학교폭력과 사교육에 관한 우려에 대해서 "대체로 동감한다"라는 답이 다소 높게 나온 것 외에는 동감하지 않는다는 답이 더 많았다. 학교폭력과 사교육에 관한 우려에서도 동감하지 않는다는 답이 학생 63.3%, 학부모 57.0% (학교폭력), 학생 62.5%, 학부모 57.0% (사교육) 더 많다.

이를 통해 학생인권조례에 관해 언론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제기되는 우려가 상당히 과장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학생인권조례가 교육을 포기하는 것, 반교육적인 것이라는 주장이나 교권을 침해한다는 주장 등은 전혀 동감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학교폭력과 사교육의 경우는 학교폭력과 사교육 자체에 대한 일반적인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조치들과 함께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체 별

○ 체벌에 대한 생각은 어떤지 (교사)

없어져야 한다	없어져야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문화나 교육여건 가운데서는 불가	있어야 한다
60.3%	32.8%	7.0%

교사들 중 대다수가 체벌이 없어져야 한다는 데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벌이 있어야 한다고 답한 교사는 단 7.0%에 지나지 않았다. 체벌을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교육여건을 개선한다면 체벌을 없애는 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 학교에서 체벌을 받았는지 (학생)

받았다	받지 않았다
69.9%	30.1%

○ 학교 체벌이 잘못을 알고 고치는 데 영향이 있었는지 (학생)

그렇다 (영향 있음)	아니다 (영향 없음)
39.1%	60.9%

학생들 중 다수가 체벌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생들 중 60.9%는 체벌이 잘못을 알고 고치는 데 영향이 없다고 답했다. 체벌이 잘못을 알고 고치는 데 영향이 있었다고 한 경우에도 그 모두가 체벌 외의 다른 방법으로 지도가 불가능하지는 않았을 것임을 고려하면, 체벌이 교육적으로 반드시 필요하거나 효과가 있는 수단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다.

○ 체벌을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빈도로 하는지 (교사) - 학교급별 분석

	전혀 하지 않는다	거의 하지 않으며 불가피하게 할 때가 있다	일정한 원칙을 세워놓고 그 한계 내에서 교육적 체벌을 한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체벌하는 편이다
초등학교	30.8% (133)	54.2% (234)	11.3% (49)	3.7% (16)
중학교	19.3% (84)	56.9% (248)	19.5% (85)	4.4% (19)
고등학교	34.7% (192)	45.3% (251)	16.4% (91)	3.6% (20)
합계	28.7%	51.5%	16.0%	3.8%

χ^2 검정 : χ^2 값은 37.865이며 $p=0.00$ 이다. 학교급과 교사들이 체벌을 하는 것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있다.

교사들의 경우에 체벌을 전혀 하지 않거나 거의 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거의 하지 않으며 불가피하게 하는 교사들이 51.5%로 과반을 차지하는데, 교사들이 체벌이 없어져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고 답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해석해볼 수 있다. 이러한 교사들은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교육활동을 지원하면 충분히 체벌을 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중학교에 체벌을 하는 교사들의 비율이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중학교에 좀 더 세심한 지원과 감독이 필요할 것이다.

○ 학교에서 체벌이 일어나는 주된 이유로 2가지 고른 것(교사)

두발-복장 문제	학교에 지각, 결석	자율학습이나 보충수업에 지각, 결과	
11.2%	7.7%	6.5%	
과제를 안 했거나 수업태도가 안 좋아서	성적 문제	교사의 지시에 불응하거나 저항	학생 간 폭력, 절도, 기물파손 등
54.1%	0.7%	58.8%	27.8%

○ 학교에서 체벌을 받았다고 답한 1250명(69.9%)의 학생들이 체벌의 주된 이유로 모두 고른 것

두발-복장 문제	학교에 지각, 결석	자율학습이나 보충수업에 지각, 결과	과제를 안 했거나 수업태도가 안 좋아서
41.0%	33.2%	19.1%	56.8%
성적 문제	교사의 지시에 불응하거나 저항	학생 간 폭력, 절도, 기물파손 등	이유없이
18.5%	19.4%	10.6%	12.6%

(※ %는 1250명 중에서의 비율)

교사들은 체벌이 일어나는 주된 이유로 "교사의 지시에 불응하거나 저항", "과제를 안 했거나 수업태도가 안 좋아서", "학생 간 폭력, 절도, 기물파손 등" 이 셋을 가장 많이 꼽았다. 반면 학생들은 "과제를 안 했거나 수업태도가 안 좋아서"를 선택한 답이 높은 것은 교사들과 마찬가지로 그 외에는 "두발-복장 문제" "학교에 지각, 결석"을 많이 꼽았다. 교사들과 학생들이 서로 체벌에 대해 경험하고 인식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다. 교사들은 학생들이 지시에 불응하거나 저항하고 폭력, 절도 등을 저질러서 어쩔 수 없이 체벌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하지만, 학생들은 용의복장 단속이나 지각 등을 했을 때 체벌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느끼고 있다. 그러므로 학교 생활 규정을 인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민주적으로 바꾸기만 해도 학생들이 경험하는 체벌의 상당 부분이 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교사와 학생이 함께 수업 태도 등과 관련해서 체벌이 많다고 응답한 것을 볼 때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더 자발적, 적극적으로 교육활동에 참여하고 수업을 더 잘 지원할 방법 등을 모색해야 한다.

○ 요즘 체벌이 줄었는지 (학생) - 지역별 분석

	줄었다	똑같다	늘어났다
서울	62.4% (362)	32.8% (190)	4.8% (28)
경기도	51.8% (226)	41.5% (181)	6.7% (29)
인천	42.1% (159)	51.3% (194)	6.6% (25)
합계	53.5% (747)	40.6% (565)	5.9% (82)

χ^2 검정 : χ^2 값은 39.539이며 $p=0.00$ 이다. 즉 지역과 체벌 감소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있다.

전반적으로 체벌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알게 해준다. 학생인권 등에 대해 사회적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체벌금지에 대해 공론화되면서 일어나는 현상으로 보인다. 특히 서울의 학교에서 체벌이 더욱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서울교육청에서 올해 2학기에 체벌금지 조치를 취한 결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체벌이 줄지 않고 똑같거나 늘어났다는 답 또한 결코 적지 않기 때문에 체벌을 근절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 체벌의 대체별로 거론되는 상벌점제가 교육적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학생)

이주 효과가 있다	조금은 효과가 있다	별로 효과가 없다	전혀 효과가 없다
5.2%	36.9%	33.4%	24.5%

대부분의 학교에 존재하는 상벌점제에 대해 학생들 중 다수는 실제 교육적 효과가 없다고 생각했다. 상벌점제가 학생들의 생활을 점수로 통제하는 데 목적이 있어서, 학생들이 잘못을 고치게 만들기보다는 점수에 따라 타율적으로 행동하게 만들기 때문으로 보인다. 체벌의 대안은 체벌과 같은 발상으로 학생들을 어떻게 통제하고 처벌하느냐가 아니라 다른 관점에서 교육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 체벌 대신 학생 지도 수단으로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교사) (2개 선택)

교내 청소나 봉사	독서, 글쓰기	학생에게 맞춘 특별교육, 전문가와의 상담 및 치료	
15.6%	10.9%	68.9%	
사회단체 봉사활동	상벌점제	성찰교실	
13.9%	14.5%	36.7%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체벌을 가하는 대신 학생에게 맞춘 특별교육이나, 상담 및 치료를 통해 지도하는 것이 효과가 있다고 답한 게 68.9%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성찰교실이 효과적이라고 답한 것이 36.7%로 많았다. 상벌점제 등은 역시 효과적이라는 응답이 적었다. 이는 학생이 잘못했을 때 학생들에게 강제로 '벌'을 주는 방법보다는 대화, 소통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더 교육적이고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체벌금지 조치는 이러한 대안적이고 교육적인 방법들을 지원하고 장려하면서 이루어져야만 더 효과적일 것이다.

○ 학교에서 체벌이 없어지기 위해서 어떤 조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교사) (2개 선택)

엄격하고 구체적인 학생 지도 규정 마련	교사의 인식 변화, 통제의 대상이 아닌 하나의 인격체로 바라보기	학급당 학생 수 감축	생활지도를 위한 교육청과 학교의 역할분담 시스템 확립
46.7%	51.5%	46.0%	15.9%
학교사회사업가, 전문상담사(교사) 충원	생활지도부를 학생인권복지부로 개편	학교관리자의 학생인권연수 의무화	교육청의 교사 직무연수시 학생인권연수 배치
23.1%	2.8%	4.3%	1.9%

교사들은 학교에서 체벌이 없어지기 위해 교사들 자신의 인식, 학교에서 학생들을 보는 관점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많이 답했다. 다음으로는 엄격하고 구체적인 학생 지도 규정의 마련, 그리고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는 것이 체벌을 없애기 위해 필요한 조건이라고 꼽았다. 체벌 없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서로가 인간적인 관계를 맺고 소통하는 학교, 민주적인 법치가 이루어지는 학교가 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3. 보충수업이나 자율학습 실태

○ 보충수업, 방과후학습, 자율학습 등에 어떻게 참가하는지 (학생) - 학교별 분석

	학교	강제적	반강제적	자발적	참여하지 않음
방과후학교 · 보충수업	중학교	18.5%	15.3%	30.2%	36.0%
	일반계고	44.8%	24.2%	18.3%	12.8%
	전문계고	7.4%	6.6%	39.3%	46.7%
	합계	30.3%	18.5%	25.3%	26.0%
야간자율학습	중학교	2.6%	3.7%	15.7%	78.0%
	일반계고	30.0%	29.3%	23.2%	17.4%
	전문계고	3.5%	3.5%	23.0%	70.0%
	합계	16.7%	16.6%	20.4%	46.3%
방학 중 보충수업 · 자율학습	중학교	7.9%	11.6%	24.7%	55.8%
	일반계고	35.6%	28.6%	23.1%	12.8%
	전문계고	4.7%	2.3%	28.0%	65.0%
	합계	21.5%	18.7%	24.2%	35.6%
0교시 (아침보충수업)	중학교	7.5%	7.3%	12.9%	72.3%
	일반계고	22.0%	5.6%	8.8%	63.7%
	전문계고	9.4%	5.1%	9.4%	76.2%
	합계	15.0%	6.2%	10.2%	68.6%
주말자율학습 · 보충수업	중학교	2.3%	3.3%	11.5%	82.9%
	일반계고	13.7%	9.0%	14.9%	62.3%
	전문계고	3.5%	1.2%	11.4%	83.9%
	합계	8.3%	5.8%	13.2%	72.7%

○ 보충수업, 방과후학습, 자율학습 등에 학생들이 어떻게 참가하는지 (교사) - 학교급별 분석

	학교	강제적	반강제적	자발적	참여하지 않음
방과후학교 · 보충수업	초등학교	13.9%	23.0%	50.3%	12.9%
	중학교	20.8%	35.0%	42.6%	1.6%
	고등학교	27.0%	46.7%	25.2%	1.1%
	합계	21.3%	36.6%	37.6%	4.6%

야간자율학습	초등학교	11.0%	17.6%	9.1%	62.3%
	중학교	12.3%	17.3%	21.8%	48.8%
	고등학교	18.9%	44.3%	29.9%	6.9%
	합계	14.7%	28.9%	21.6%	34.8%
방학 중 보충수업 · 자율학습	초등학교	13.1%	27.5%	25.1%	34.3%
	중학교	16.6%	30.3%	33.9%	19.2%
	고등학교	19.9%	45.4%	28.4%	6.4%
	합계	16.9%	35.9%	29.0%	18.1%
0교시 (아침보충수업)	초등학교	16.6%	18.0%	9.1%	56.3%
	중학교	17.6%	16.8%	6.9%	58.7%
	고등학교	20.8%	19.5%	6.7%	53.0%
	합계	18.5%	18.6%	7.4%	55.5%
주말자율학습 · 보충수업	초등학교	7.8%	16.4%	12.7%	63.1%
	중학교	7.5%	12.8%	8.8%	71.0%
	고등학교	11.7%	25.4%	22.4%	40.6%
	합계	9.3%	19.3%	15.6%	55.8%

정규 수업 외 학습을 강제하는 비율이 그다지 높지 않아 보일 수 있으나 애초에 학습이 강제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결코 낮지 않은 비율이다. 또한 중학교나 전문계 고등학교를 제외하고 일반계 고등학교만 보면 여전히 강제적/반강제적으로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을 시킨다고 응답한 학생들이 많다. 야간자율학습이나 보충수업 등이 이제는 중학교, 초등학교에도 제법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강제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학부모들이 보충수업, 자율학습 등으로 자녀들이 학교에 오래 있기를 바라는 까닭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학부모)

학교에서 책임지고 강제로라도 공부시켜주길 바래서	양육·가사노동이 부담스러워서	학교 말고는 지역 사회에 학생들이 안전하게 놀거나 배울 만한 곳이 없어서	일 때문에 집을 비워두는 시간이 많아서	기타
44.5%	5.9%	28.5%	11.9%	8.9%

학교에서 자녀들을 강제로라도 공부시켜주길 바란다는 답변이 가장 많이 나온 이유는 역시 입시 때문으로 보인다. 학부모 입장에서는 공교육 내에서 학습하는 시간이 줄면 그 만큼 사교육에 기대야 하는 부분이 커지기 때문이다. 한편 "학교 말고는 지역 사회에 학생들이 안전하게 놀거나 배울 만한 곳이 없어서"라는 답 또한 28.5%로 꽤 높게 나왔다. 이는 학교 이외에 지역사회에 청소년을 위한 문화시설, 학습시설이 얼마나 부족한지도 보여준다. 학교에서 강제로 야간자율학습이나 보충수업을 시키지 않으면 사교육이 증가한다는 이유로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을 의무화하기 보다는 지역사회에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적·교육적 공공시설들을 확보하는 것이 좋은 방법일 수 있다. 기타 응답 중에서는 "학교에 오래 남아있길 바라지 않는다"와 같은 답이 가장 많았다.

4. 학교의 전반적인 인권 상황

○ 다음 경기학생인권조례에 명시된 권리들이 현재 학교에서 보장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학생, 학부모) / 다음 경기학생인권조례에 명시된 권리들이 보장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교사)

구타기합 체벌, 따돌림, 집단괴롭힘, 성폭력 등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권리					
	매우 잘보장됨	잘보장됨	잘 보장되지 않음	전혀 보장되지 않음	잘모르겠음
학생	6.8%	24.1%	24.2%	14.4%	30.4%
학부모	4.7%	38.0%	31.1%	6.4%	19.7%
교사	매우 필요하다	필요하다	그리 필요치 않다	전혀 필요없다	모르겠다
	77.0%	20.0%	2.2%	0.5%	0.3%
복장, 두발 등에서 자유롭게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					
	매우 잘보장됨	잘보장됨	잘 보장되지 않음	전혀 보장되지 않음	잘모르겠음
학생	2.3%	8.1%	25.4%	56.1%	8.1%
학부모	4.1%	28.1%	40.4%	21.2%	6.4%
교사	매우 필요하다	필요하다	그리 필요치 않다	전혀 필요없다	모르겠다
	35.1%	46.5%	16.4%	1.5%	0.4%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 등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					
	매우 잘보장됨	잘보장됨	잘 보장되지 않음	전혀 보장되지 않음	잘모르겠음
학생	10.6%	23.5%	21.1%	31.2%	13.7%
학부모	10.5%	42.0%	26.9%	14.5%	6.0%
교사	매우 필요하다	필요하다	그리 필요치 않다	전혀 필요없다	모르겠다
	58.1%	37.4%	4.1%	0.3%	0.1%
과중한 학습 부담에서 벗어나 적절한 휴식을 취할 권리					
	매우 잘보장됨	잘보장됨	잘 보장되지 않음	전혀 보장되지 않음	잘모르겠음
학생	4.6%	19.0%	30.9%	26.1%	19.5%
학부모	4.3%	36.3%	37.0%	12.5%	9.9%
교사	매우 필요하다	필요하다	그리 필요치 않다	전혀 필요없다	모르겠다
	53.3%	40.5%	5.7%	0.3%	0.2%
일기수첩·휴대전화 등 사적 물건에 대해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으며 자의적인 소지품검사압수 등을 당하지 않을 권리					
	매우 잘보장됨	잘보장됨	잘 보장되지 않음	전혀 보장되지 않음	잘모르겠음
학생	7.4%	21.7%	23.2%	33.7%	13.9%

학부모	5.8%	39.1%	33.6%	12.0%	9.6%
교사	매우 필요하다	필요하다	그리 필요치 않다	전혀 필요없다	모르겠다
	34.4%	42.6%	18.6%	3.5%	0.8%
명찰 착용을 강요당하지 않으며 가족, 교우관계, 성적, 징계기록, 교육비 납부 여부 등 개인 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매우 잘보장됨	잘보장됨	잘 보장되지 않음	전혀 보장되지 않음	잘모르겠음
학생	8.1%	23.9%	25.9%	23.5%	18.5%
학부모	7.2%	49.1%	25.1%	8.8%	9.8%
교사	매우 필요하다	필요하다	그리 필요치 않다	전혀 필요없다	모르겠다
	45.7%	41.2%	10.7%	1.7%	0.6%
자유롭게 생각하고 양심에 반하는 내용의 반성, 서약, 진술 등을 강요받지 않으며 원하는 종교를 믿거나 믿지 않을 수 있는 권리					
	매우 잘보장됨	잘보장됨	잘 보장되지 않음	전혀 보장되지 않음	잘모르겠음
학생	23.5%	32.0%	10.7%	10.4%	23.3%
학부모	17.0%	54.8%	13.2%	4.1%	10.9%
교사	매우 필요하다	필요하다	그리 필요치 않다	전혀 필요없다	모르겠다
	59.2%	34.8%	4.5%	1.0%	0.6%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하고 언론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					
	매우 잘보장됨	잘보장됨	잘 보장되지 않음	전혀 보장되지 않음	잘모르겠음
학생	12.9%	28.9%	19.3%	12.4%	26.5%
학부모	9.1%	47.5%	24.4%	5.3%	13.6%
교사	매우 필요하다	필요하다	그리 필요치 않다	전혀 필요없다	모르겠다
	56.2%	38.9%	4.0%	0.7%	0.2%
자유롭게 자치활동을 하고 학교운영에 참여할 권리					
	매우 잘보장됨	잘보장됨	잘 보장되지 않음	전혀 보장되지 않음	잘모르겠음
학생	10.2%	30.5%	19.2%	13.4%	26.7%
학부모	8.4%	48.5%	22.3%	6.7%	14.1%
교사	매우 필요하다	필요하다	그리 필요치 않다	전혀 필요없다	모르겠다
	58.3%	35.2%	5.8%	0.5%	0.3%
교육정책을 결정할 때 참여할 권리					
	매우 잘보장됨	잘보장됨	잘 보장되지 않음	전혀 보장되지 않음	잘모르겠음
학생	5.0%	13.5%	20.3%	31.1%	30.1%

학부모	3.6%	30.1%	32.8%	15.0%	18.5%
교사	매우 필요하다	필요하다	그리 필요치 않다	전혀 필요없다	모르겠다
	38.0%	45.1%	14.9%	1.4%	0.6%
안전하고 차별없이 급식을 제공받고 급식에 대한 정보를 알고 결정에 참여할 권리					
	매우 잘보장됨	잘보장됨	잘 보장되지 않음	전혀 보장되지 않음	잘모르겠음
학생	12.7%	26.7%	20.0%	24.5%	16.2%
학부모	8.2%	43.8%	25.6%	11.3%	11.1%
교사	매우 필요하다	필요하다	그리 필요치 않다	전혀 필요없다	모르겠다
	58.3%	37.1%	4.0%	0.6%	0.0%
최적의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이플 때 적절한 치료를 받고 보건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매우 잘보장됨	잘보장됨	잘 보장되지 않음	전혀 보장되지 않음	잘모르겠음
학생	12.5%	37.2%	20.5%	14.7%	15.2%
학부모	9.8%	57.3%	19.2%	4.6%	9.1%
교사	매우 필요하다	필요하다	그리 필요치 않다	전혀 필요없다	모르겠다
	63.4%	32.5%	3.5%	0.4%	0.2%
성별, 종교, 나이, 출신국가, 언어, 장애, 외모, 임신출산, 가족상황, 인종, 사상의견, 성적지향,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매우 잘보장됨	잘보장됨	잘 보장되지 않음	전혀 보장되지 않음	잘모르겠음
학생	12.8%	24.3%	18.4%	16.9%	27.6%
학부모	9.9%	44.7%	22.9%	5.5%	17.0%
교사	매우 필요하다	필요하다	그리 필요치 않다	전혀 필요없다	모르겠다
	72.5%	25.1%	1.8%	0.5%	0.1%
징계 과정에서 공정한 절차를 보장받을 권리					
	매우 잘보장됨	잘보장됨	잘 보장되지 않음	전혀 보장되지 않음	잘모르겠음
학생	8.0%	20.1%	16.0%	13.5%	42.4%
학부모	5.4%	39.1%	20.7%	5.1%	29.7%
교사	매우 필요하다	필요하다	그리 필요치 않다	전혀 필요없다	모르겠다
	65.9%	31.3%	2.4%	0.4%	0.1%

학부모들은 대체적으로 학생인권이 잘 보장된다고 대답한 비율이 높다. 학생들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많은 수가 답한 항목에 대해서도 학부모들은 잘 보장된다고 답한 것에서 학부모들이 생각하는 학생들의 인권 상황과 학생들이 생각하는 인권 상황 사이에 온도차가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학부모들은 학생들의 학교에서의 인권 상황이나 생활을 잘 모르기 때문으로도 풀이해볼 수 있다.

학생들은 보장되지 않는다고 답한 것이 많은 한편으로 모르겠다고 답한 비율이 높은 편이다. 이는 다수의 학생들이 스스로의 인권에 대해 잘 모르고, 학생들 사이에서 이러한 권리들에 대해 자신이 보장받아야 할 인권이라는 인식이 형성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학생들에게도 이미 많이 알려진 두발, 복장에서 개성을 실현할 권리 등은 잘 보장되지 않는다는 답변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교사들의 경우에는 학생인권의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한 필요성을 물어보았다. 그 결과 각각의 인권 내용들에 대해서 보장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답변을 한 교사들이 매우 많았고, 특히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차별받지 않을 권리, 자유롭게 의사표현을 하고 참여할 권리, 강제로 학습하지 않고 쉴 권리 등에서는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더 많은 경향을 보였다.

5. 교 권

○ 누구로부터 교권침해를 받는다고 생각하는지 (교사)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은 편	전혀 그렇지 않다
교육과학기술부	52.5%	34.6%	12.0%	0.9%
교육청	40.2%	43.3%	15.6%	0.9%
학교관리자	36.7%	40.5%	20.7%	2.1%
학부모	18.4%	43.8%	33.4%	2.2%
학생	10.2%	29.6%	44.1%	16.0%

보통 교권을 학생들과 교사들 사이의 문제로 보는 통념과는 달리 교사들은 교권을 침해하는 주체로 교과부, 교육청 등 국가기관이나 학교의 관리자를 더 많이 꼽았다. 학생들은 교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더 많았다. 학부모가 교권을 침해하는지에 대해서는 그렇다는 답변이 그렇지 않다는 답변보다 조금 더 많았다. 학생인권과 교권을 대립되는 것으로 보는 논의가 잘못되었음을 보여준다.

○ 학교에서 교사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교사)

학생에 대한 통제 강화	비민주적 학교 운영과 교육행정 개선	교사의 기본적 권리와 교육적 자율성 인정
3.0%	60.9%	69.4%
교육예산 확대 및 지원 강화	입시경쟁교육의 해소	학교가 책임지는 민원 창구 개설
5.3%	38.2%	4.4%

교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기본적 권리와 교육적 자율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답변 다음으로 비민주적인 학교운영, 교육행정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는 답변이 많았다. 또 입시경쟁교육을 해소하는 것도 교권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많이 꼽혔다. 학생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야 교권이 보장된다는 답변은 3.0%로 아주 적어서 학생인권을 보장하는 것이 교권을 침해하거나 저해하는 것이 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6. 학생간 폭력

○ 학생간 폭력 해결을 위해 학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학부모, 교사)

	학생 통제·규율 강화	인권 교육 실시	효과적 의사소통 방법 교육	상담과 치유 프로그램 운영 강화	자아 존중감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 실시	복지제도 교육제도, 환경 개선	기타
학부모	12.1%	15.8%	25.6%	21.3%	16.3%	8.3%	0.6%
교사	4.3%	11.2%	22.4%	23.3%	26.3%	10.6%	1.9%

앞서 학생인권 보장이 학교폭력(학생간 폭력)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 그리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학생간 폭력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것을 학부모와 교사에게 묻자 학생들에 대한 통제와 규율강화가 필요하다는 답은 적게 나왔다. 학부모와 교사들은 주로 "효과적 의사소통 방법 교육", "자아 존중감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 실시", "상담과 치유 프로그램 운영 강화", "인권교육 실시" 등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오히려 학생인권조례가 학생간 폭력 감소에 긍정적 영향을 가져올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7. 교사들이 인권교육을 받아본 경험

○ 인권교육을 다음의 과정들을 통해 받아본 적이 있는지 (교사)

	교대사대 교육과정	교육청주관 신규교사 교육과정	교육청주관 1정연수	자율연수
있다	10.3%	4.8%	6.5%	45.6%
없다	89.7%	95.2%	93.5%	54.4%

교사들의 인권교육 이수 경험은 아주 적었다. 하지만 자율연수를 통해 인권교육을 접한 경우는 비교적 많은 편이었는데 이는 인권단체, 시민단체 등에서 지속적으로 교사를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을 열어왔기 때문에, 흥미와 필요를 가진 교사가 적극적으로 이수하는 경우이다. 현재 교사가 되기 위한 대학과정, 그리고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교육에서는 거의 인권교육을 접할 수 없는 실정이다. UN아동권리위원회가 교육행정가나 교사들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학교가 인권친화적 공간이 되기 위해서는 교육대학, 사범대학, 그리고 교육당국에서 교사를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8. 학교에서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이유, 바꿔야 할 점 등

○ 학교가 학생들에게 어떤 역할을 해주길 바라는지 (학부모)

입시와 취업에 도움이 되는 유용한 입시전문기관	학생들을 통제해주는 관리기관	인문학적·과학적·실용적 지식의 전달기관	학생들의 가치관과 인생에 도움을 주고 지도하는 기관
10.4%	3.7%	11.8%	74.0%

○ 현재 학교가 하고 있는 역할에 가장 가까운 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학부모)

입시와 취업에 도움이 되는 유능한 입시전문기관	학생들을 통제해주는 관리기관	인문학적·과학적·실용적 지식의 전달기관	학생들의 가치관과 인생에 도움을 주고 지도하는 기관
36.4%	29.8%	17.1%	16.7%

학부모들에게 학교가 어떤 역할을 해주길 바라는지, 그리고 연이어 그럼 현재 학교가 하는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물었다. 이에 대해 74.0%의 학부모들은 학교가 "학생들의 가치관과 인생에 도움을 주고 지도하는 기관"이길 바란다고 답했다. 하지만 현실의 학교가 하는 역할은 입시기관이거나 통제 관리기관이라고 생각한다는 답이 제일 많이 나타났고, 현재 학교가 하는 역할이 "학생들의 가치관과 인생에 도움을 주고 지도하는 기관"이라는 답은 16.7%에 지나지 않았다. 학교가 올바른 교육기관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입시기관이자 학생들을 통제하는 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는 결과다.

○ 학교가 더 민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누구의 의식이 가장 많이 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학생	교장/교감선생님	선생님	학부모
학생	21.9%	37.9%	31.6%	8.7%
학부모	14.4%	42.2%	32.9%	10.3%
교사	3.6%	65.7%	21.7%	8.9%

학생, 학부모, 교사는 모두가 학교가 더 민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교장, 교감 등 학교 관리자 등의 의식이 가장 많이 변해야 한다고 꼽았다. 현재 학교관리자들이 학교 운영에 대해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 한편으로 학교를 민주적·인권적으로 운영하려는 의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지적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교사가 바뀌어야 한다는 응답도 많았다.

○ 학교에서 학생들의 인권이 잘 보장되지 않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2개 선택)

학생	인권교육의 부재와 사람들의 변하지 않는 의식	불합리한 학교 규정 및 징계 등		교육복지예산 부족과 열악한 교육환경
	38.3%	54.1%		14.5%
학부모	인권교육의 부재와 사람들의 변하지 않는 의식	불합리한 학교 규정 및 징계 등		교육복지예산 부족과 열악한 교육환경
	45.3%	30.4%		17.7%
교사	인권교육의 부재와 사람들의 변하지 않는 의식	불합리한 학교 규정 및 징계 등		교육복지예산 부족과 열악한 교육환경
	15.4%	40.5%		25.6%
학생	빈부격차, 차별, 불황 등 사회적인 모순	입시위주의 교육정책	학교의 폐쇄적인 의사소통 구조	기타
	16.3%	47.9%	22.0%	
학부모	빈부격차, 차별, 불황 등 사회적인 모순	입시위주의 교육정책	학교의 폐쇄적인 의사소통 구조	기타
	16.3%	47.9%	22.0%	

교사	인권교육의 부재와 사람들의 변하지 않는 의식	불합리한 학교 규정 및 징계 등		교육복지예산 부족과 열악한 교육환경
	44.5%	14.6%		15.8%
	빈부격차, 차별, 불황 등 사회적인 모순	입시위주의 교육정책	학교의 폐쇄적인 의사소통 구조	기타
11.9%	55.1%	28.7%		

학생, 학부모, 교사는 모두 학교에서 학생의 인권이 침해당하는 이유로 "인권교육의 부재와 사람들의 변하지 않는 의식", 그리고 "입시위주의 교육정책"을 가장 많이 지목했다. 교육주체들의 의식 변화와 동시에 교육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한 셈이다. 학생들은 학교 규정으로 인한 인권 침해를 많이 꼽았으나 학부모들은 학생들보다 더 적게, 교사들은 그보다도 더 적게 학교 규정을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모들이나 교사들보다 학생들이 자기 생활에 직접 간섭하는 규정의 문제를 피부로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 다니고 싶은 학교를 만들기 위해 가장 필요한 조치는 뭐라고 생각하는지 (2개 선택)

학생	인권교육 강화	학교 의사결정에 학생 교사 등 민주적 참여 보장		입시경쟁교육 해소
	25.9%	46.5%		45.3%
학부모	인권교육 강화	학교 의사결정에 학생 교사 등 민주적 참여 보장		입시경쟁교육 해소
	27.2%	48.3%		50.2%
교사	인권교육 강화	학교 의사결정에 학생 교사 등 민주적 참여 보장		입시경쟁교육 해소
	6.1%	54.7%		65.3%
학생	교육 시설 및 환경 개선	인권침해 구제수단 강화	교사의 업무 경감 및 지원 강화	기타
	39.5%	20.3%	10.0%	
학부모	교육 시설 및 환경 개선	인권침해 구제수단 강화	교사의 업무 경감 및 지원 강화	기타
	38.1%	10.0%	10.2%	
교사	교육 시설 및 환경 개선	인권침해 구제수단 강화	교사의 업무 경감 및 지원 강화	기타
	16.3%	3.5%	45.3%	

다니고 싶은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조치에 대한 의견도 인권이 보장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한 응답과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입시경쟁교육 해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학생 45.3%, 학부모 50.2%, 교사 65.3%로 가장 많았다. 또한 "학교 의사결정 과정에 학생, 교사 등 민주적 참여 보장"이 필요하다는 답이 그 다음으로 많았다.

학생들과 학부모들 중에는 “교육 시설 및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한 사람들이 더 많고, 교사들은 “교사의 업무 경감 및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고 답한 사람들이 더 많다. 교육예산을 더 확대하여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교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학교 교육의 질을 더 높여야 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참고자료 2.

서울특별시학생인권조례안 4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헌법」,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하여 학생의 인권이 학교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라 함은 서울특별시 내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이라 함은 제1호의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 및 퇴학 여부를 다루는 사람을 말한다.
3. “학생의 인권”이라 함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 중 학생에게 적용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말한다.
4. “교직원”이라 함은 「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의 교원 및 같은 조 제2항의 직원을 말한다.
5. “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유아교육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6.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유아 또는 학생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7. “유아”라 함은 만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

제3조(학생의 인권 보장원칙)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학생의 인권은 학생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권리이며, 학생의 인권은 이 조례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4조(책무) ① 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고 정책을 수립할 때 학생의 인권을 실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교직원, 학생의 보호자 등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보호·실현하고 학생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생은 인권을 학습하고,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며, 교사 등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환경의 개선) ①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경쟁 교육을 지양하여 학생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및 학교의 장은 학생과 교직원의 교육활동에 적합한 교육시설과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학생의 인권

44) 위 조례안은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서울본부의 안이며 현재 주민발의로 추진되고 있음.

제1절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제6조(차별받지 않을 권리)** ①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경제적 지위,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 ②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들은 제1항에 예시한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2절 폭력 및 위협으로부터의 자유

- 제7조(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① 학생은 체벌, 따돌림, 집단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 및 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 ② 학생은 특정 집단이나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에 기초한 정보를 의도적으로 누설하는 행위나 모욕, 괴롭힘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 ③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체벌, 따돌림, 집단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 및 언어적 폭력을 방지하여야 한다.

- 제8조(위험으로부터의 안전)** ①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 ② 학교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신속하게 피해자를 구조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및 지역주민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3절 교육에 관한 권리

- 제9조(학습에 관한 권리)** ① 학생은 학습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 ②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치지 않은 교육과정을 운영하거나 학생에게 교내·외 행사 참석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특성화 고등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현장실습 과정에서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 ④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장애 학생(일시적 장애를 포함함, 이하 같음), 다문화가정 학생, 외국인 학생, 예체능 학생, 학습곤란을 겪는 학생 등의 학습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 ⑤ 취학연령의 이주아동(18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서 국내에서 90일 이상 거주한 자를 말한다)은 교육기본법 제8조와 초·중등교육법 제12조에 따른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제10조(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의 자유)** ① 학생은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 등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
- ②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에게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 등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되며,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 ③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방과후학교 등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을 함에 있어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의 다양성과 학생의 실질적인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

- 제11조(휴식을 취할 권리)** ① 학생은 건강하고 개성 있는 자아의 형성·발달을 위하여 과중한 학습 부담에서 벗어나 적절한 휴식을 취할 권리를 가진다.

- ②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을 강요하는 등의 방법으로 학생의 휴식을 취할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교육감은 학생의 휴식을 취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
- ④ 학교의 장은 학생의 휴식을 취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충분한 휴게 시간과 휴게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제4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정보의 권리

- 제12조(개성을 실현할 권리)** ① 학생은 두발, 복장 등 용모에 있어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
- ②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제1항의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

- 제13조(사생활의 자유 및 사생활의 보호를 받을 권리)** ① 학생은 사생활의 자유 및 가족, 교우관계, 성적, 병력, 징계 기록, 교육비 미납사실, 성적지향·성정체성 등의 개인 정보(이하 "개인 정보"라 한다)를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②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학생의 동의 없이 소지품을 검사하고 압수하는 행위, 단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소지품을 일괄 검사하는 행위
 3. 일기장이나 개인수첩 등 학생의 사적인 기록물을 열람하는 행위
 4. 학생의 휴대전화기 및 기타 전자기기의 소지 및 사용을 금지하는 행위. 단 제18조의 절차에 따라 수업시간에 한하여 전자기기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5. 학교 외에서의 이름표 착용을 강요하는 행위
 6. 보호자의 학력, 재산, 종교, 가족관계를 비롯한 교육활동과 관련이 없는 정보를 조사하거나 확인하는 행위
 7. 학생의 개인 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
 8. 학생의 교우관계에 간섭하는 행위
- ③ 제2항 제1호 단서에 따라 학생의 소지품 검사를 하는 경우 그 검사는 필요·최소한의 정도에 그쳐야 한다.
- ④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다른 방법으로는 안전을 관리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학교 내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할 수 있다.
- ⑤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제4항에 따라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함에 있어 설치 여부나 설치 장소에 관하여 미리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고, 설치 후에는 설치장소를 누구나 쉽게 알 수 있게 표시하여야 한다.
- ⑥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개인 정보를 수집·처리·관리함에 있어서 적법하고 적절한 수단과 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 ⑦ 누구든지 학생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개인 정보를 지득한 경우에는 이를 함부로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4조(정보의 권리)** ① 학생은 학생 본인에 관한 학교 기록을 언제든지 열람할 권리를 가진다.
- ② 학생은 학교의 장에 대해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 ③ 학교의 장은 제2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당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공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청구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공개를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공개하여야 한다.
- ④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 본인에 관한 기록 중에 부정확한 내용,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내용, 학생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정정이나 삭제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 ⑤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예결산 등 학교 재정에 관련된 정보를 학생이 쉽게 알 수 있는 내용과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5절 양심·종교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

제15조(양심·종교의 자유) ① 학생은 세계관, 인생관 또는 가치적·윤리적 판단 등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에게 양심에 반하는 내용의 반성, 서약 등 진술을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학생에게 예배법회 등 종교적 행사에 참여하거나 기도참선 등 종교적 행위를 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
2. 학생에게 특정 종교과목의 수강을 강요하는 행위
3. 종교과목의 대체과목에 대하여 과제물의 부과나 시험을 실시하여 대체과목 선택을 방해하는 행위.
4. 특정 종교를 믿거나 믿지 아니한다는 등의 종교적인 이유로 학생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등의 차별행위
5. 학생의 종교 선전을 제한하는 행위
6. 특정 종교를 비방하거나 선전하여 학생에게 종교적 편견을 일으키는 행위
7. 정당한 사유 없이 교내 행사를 외부 종교시설에서 개최하는 행위
8. 종교와 무관한 과목 시간 중 특정 종교를 반복적, 장시간 언급하는 행위
- ④ 학교의 장은 교직원이 전2항을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지도·감독할 의무가 있다.
- ⑤ 학교의 장은 특정 종교과목의 수업을 원하지 아니하는 학생들을 위하여 이를 대체할 과목을 마련해야 한다.

제16조(의사 표현의 자유) ① 학생은 다양한 수단을 통해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그 의견을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은 서명이나 설문조사 등을 통해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모을 권리를 가진다.
 ③ 학생은 학교 안팎에서 집회를 열거나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④ 학생은 학교 안팎에서 모임이나 단체활동 및 정치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⑤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경우 부당하고 자의적인 간섭이나 제한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교지 제작, 인터넷 홈페이지의 운영 등 학생의 언론활동에 있어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이에 필요한 시설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6절 자치 및 참여의 권리

제17조(자치활동의 권리) ① 동아리, 학생회 기타 학생자치조직의 구성, 소집, 운영, 활동 등 학생의 자치적인 활동은 보장된다.
 ②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자치조직의 구성과 소집 및 운영 등 학생자치활동의 자율과 독립을 보장하고 학생자치활동에 필요한 시설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성적, 징계기록 등을 이유로 학생자치조직의 구성원 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며, 학생자치조직의 대표는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에 의해 선출되어야 한다.
 ④ 학생자치조직은 다음 각호의 권리를 가진다.
 1. 학생자치활동에 필요한 예산과 공간, 비품을 제공받을 권리
 2. 학교운영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할 권리
 3. 학생자치조직이 주관하는 행사를 자유롭게 개최할 수 있는 권리
 ⑤ 학생회는 학생 대표 기구로서 다음 각호의 권리를 가진다.

1. 학생회에서 함께 일할 임원을 선임할 권리
2. 대의원회의를 비롯한 각종 회의를 소집하고 개최할 수 있는 권리
3. 납부금 징수, 성금 모금, 학교생활, 학생복지 등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고 의견을 밝힐 수 있는 권리
4. 학생회 예산안과 결산에 대해 심의·의결할 수 있는 권리
5. 학생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한 학생회 의결 사항을 학교당국 및 학교운영위원회에 전달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들을 권리
6. 타 학교 학생회나 단체들과 연합하여 정보와 경험을 교류하고 활동 내용을 협의할 권리
7. 학생회를 담당할 교사를 추천할 권리

제18조(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 참여권) ① 학생은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보호·실현하는 방향으로 학칙 등 학교 규정을 제·개정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 과정에서 전체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체 학생들의 의결을 거쳐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 학칙 등 학교 규정은 학생의 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제한할 수 없다.

제19조(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 ① 학생은 학교의 운영 및 교육청의 교육정책결정과정에서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과 교직원은 학생대표와의 면담 등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학생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생대표는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육감은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학생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7절 복지에 관한 권리

제20조(학교복지에 관한 권리) ① 학생은 학습부진, 폭력피해, 가정위기, 비행일탈 등의 각종 위기상황 극복과 적성발견, 진로모색 등 정체성 발달을 위하여 학교에서 상담 등의 적절한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및 학교의 장은 빈곤 학생, 장애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외국인 학생, 성소수자 학생, 근로학생 등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사유로 권리 실현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배려하는 데에 우선적으로 예산 등의 자원을 배정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및 학교의 장은 학생이 사회복지에 관한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상담을 제공하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 제도를 수립 또는 정비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및 학교의 장은 특별한 상담 및 돌봄이 필요한 학생을 위하여 아동복지 및 인권과 관련된 지역 사회의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특히 보호자를 교육하고 보호자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야 한다.

제21조(교육환경에 대한 권리) ① 학생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적절한 양과 질의 도서 및 도서관 공간 확보, 청결한 환경의 유지, 화장실과 적절한 탈의 및 휴게 공간의 확보, 적절한 냉난방 관리, 녹지공간 확대 등 최적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문화활동을 향유할 권리) ① 학생은 다양한 문화활동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 ② 학교의 장 및 교직원들은 학생의 다양한 문화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 공연, 전시를 비롯한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문화활동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③ 교육감은 제2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학교 및 지역 사회의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23조(급식에 대한 권리) ① 학생은 안전한 먹을거리로 안전하게 만든 급식을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② 학교의 장은 급식재료, 급식업체 등 급식 관련 정보를 학생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③ 학교의 장은 학생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급식에 관한 의견조사를 실시하며 그 결과를 급식 제공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④ 교육감, 학교의 장은 친환경, 근거리 농산물에 기초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⑤ 교육감은 직영급식과 의무교육과정에서의 무상급식을 실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건강에 관한 권리) ① 학생은 최적의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아플 때 적절한 치료를 받고, 보건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건강권을 가진다.

- ② 여학생은 생리로 인한 고통 때문에 결석하거나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생리로 인한 고통을 겪는 여학생에 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적절한 배려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③ 교육감, 학교의 장은 학교보건사업을 실시하는데 있어 학생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학생의 선택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 ④ 교육감, 학교의 장은 학생이 아플 때 이용할 수 있는 보건실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절 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제25조(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① 학생은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기구의 구성, 소명의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 재심요청권의 보장 등 인권의 기준에 부합하는 정당한 규정과 적법한 징계 절차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 ②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징계와 그 전후의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징계대상 학생의 회복과 복귀를 목표로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지역사회 유관기관, 보호자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 ③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징계 내용을 공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상벌점제를 포함한 학생에 대한 지도 방법 및 절차에서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절 권리침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제26조(권리를 지킬 권리) ① 학생은 자기의 권리가 무엇인지 알 권리를 가진다.

- ② 학생은 인권을 옹호하고 자기나 타인의 인권을 되찾기 위한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그 행사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27조(상담 및 조사 등 청구권) ①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학생의 인권 침해에 대하여 학생인권옹호관에게 상담 및 조사 등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 ②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모든 학생의 인권 관련 사항에 대하여 관계 기관에 문서 등으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 ③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청구권 및 청원권 행사에 관하여 비밀을 보장받으며, 그 행사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 ④ 학생인권옹호관, 학교의 장 및 교육감은 청구 또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지며, 그 처리 결과를 청구 또는 청원한 사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절 소수자 학생의 권리 보장

제28조(소수자 학생의 권리 보장) ①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빈곤 학생, 장애 학생, 한부모가정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외국인 학생, 운동선수, 성소수자, 근로 학생 등 소수자 학생(이하 "소수자 학생"이라 한다)이 그 특성에 따라 요청되는 권리를 적정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②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사회구조나 문화에 따라 누구나 권리 실현에 어려움을 겪는 소수자 학생이 될 수 있음에 유념하면서 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식을 해소하는데 필요한 인권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소수자 학생을 위한 진로 및 취업 프로그램을 별도로 마련하여야 한다.
- ③ 교육감은 소수자 학생에 대하여 그 특성에 따라 요청되는 권리의 보장을 위하여 전문 상담 등의 적절한 지원 및 조력을 해야 한다.
- ④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특히 성적지향과 성별 정체성에 관한 정보를 본인의 동의없이 보호자를 포함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되며, 학생의 안전상 긴급성을 요하는 경우에도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
- ⑤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장애 학생에 대하여 교내의 교육활동에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고 참여를 보장하며, 적절한 교육 및 평가방법을 제공해야 한다.
- ⑥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빈곤 학생이 가정형편으로 말미암아 수학여행 등 교육활동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⑦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다문화가정 학생, 외국인 학생에 대하여 교육활동에서 언어문화적 차이 등으로 인한 차별 없이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또한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사실만으로 학교에 전·입학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 ⑧ 다문화가정 학생, 외국인 학생의 인권은 당사자 또는 보호자의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보호되어야 한다.
- ⑨ 다문화가정 학생, 외국인 학생은 외국에서 이수한 교육과정에 상응하는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제3장 학생인권의 진흥

제1절 인권교육

제29조(서울특별시 학생인권의 날) ① 교육감은 학생의 인권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의 날을 지정할 수 있다.

- ② 교육감은 학생인권의 날의 취지에 맞는 사업을 실시하고 학생, 교직원, 보호자 및 서울특별시민의 참여를 유도하여야 한다.

제30조(홍보) ① 교육감은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내용과 이 조례에서 보장하고 있는 내용 등 학생의 인권에 대하여 일반인용과 중·고등학생용, 초등학생용, 유치원생용 설명서 및 교육용 교재를 제작·배포하는 등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교육감은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매년 가정통신문의 형태로 발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호자 및 학생에게 이 조례 전문을 알려야 한다.

제31조(학교 내 인권교육연수) ① 학교의 장은 학생에게 학생의 인권에 관한 교육을 학기당 2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서 정한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및 특성화 고등학교 현장실습, 근로 학생의 증가 등을 고려하여 노동권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 ③ 학교의 장은 교직원을 대상으로 학생의 인권에 관한 교직원연수를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④ 학교의 장은 학생 스스로 행하는 자율적인 인권학습활동을 보장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32조(교직원 등에 대한 인권 연수 및 지원) ① 교육감은 교직원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각종 연수에 학생의 인권에 관한 내용을 편성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에서 실시하는 인권교육과 교직원에 대한 인권연수를 위하여 교육·연수자료 및 교육·연수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제33조(보호자 교육) ① 학교의 장은 보호자에 대하여 학생의 인권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보호자에 대한 인권교육 자료를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제2절 인권실천계획 등

제34조(인권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매년 서울특별시내 학생인권 실태 및 이 조례의 이행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조사 결과가 확정되는 즉시 공표하여야 하며, 이를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와 서울특별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5조(실천계획의 작성) ① 교육감은 학생의 인권과 교직원의 권리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교육활동과 적절한 수준의 교육복지휴식 시설을 갖추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실천계획을 3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계획을 수립할 때는 학생인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공청회, 토론회, 지역순회 간담회 등을 통하여 학생, 교직원, 보호자, 서울특별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36조(서울특별시학생인권심의위원회) ① 학생의 인권에 관한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정책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학생인권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서울특별시학생인권심의위원회는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학생인권옹호관 전원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서울특별시학생인권심의위원회는 인권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가지고 있으며 소수자들이 겪는 차별문제에 대하여 높은 감수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위원으로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한다.

1. 교육, 아동복지, 청소년, 의료, 법률, 인권 전문가로서 관련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또는 공개모집절차를 통해 신청을 받은 자
2. 학생참여위원회의 위원
3. 서울특별시민 중에서 학생의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고 참여의지가 있는 자로서 공개모집절차를 통해 신청을 받은 자

⑤ 서울특별시학생인권심의위원회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두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투표로 선출한다.

⑥ 서울특별시학생인권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학생인권실천계획의 수립

2. 학생의 인권에 관한 제도개선

3. 기타 학생의 인권 신장을 위하여 교육감이 제안한 사항

⑦ 서울특별시학생인권심의위원회는 위원회 활동의 효율성을 위하여 학생인권심의위원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제5항 각호의 기능 중 일부를 소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37조(학생참여위원회) ① 교육감은 학생과 관련된 정책에 대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학생참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서울특별시학생참여위원회는 10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학생참여위원회는 공개모집을 통하여 모집한 학생들 중에서 추첨을 통하여 선발한다. 다만, 위원회의 구성을 다양하게 하고 소수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20명 이내의 범위 내에서 별도의 절차를 밟아 교육감이 위촉할 수 있다.

④ 서울특별시학생참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교육감 및 학생인권옹호관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1. 서울특별시학생인권조례의 개정에 관한 사항
2. 학생인권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학생인권실천계획에 관한 사항
4. 기타 학생인권 실현 및 학생참여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 ⑤ 교육감은 지역교육청별로 학생참여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38조(학교별 평가 및 지침 제시) ① 교육감은 2년마다 학교별 학생인권실태 현황을 조사하고, 그 개선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2장에서 규정하는 권리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여 각 학교에 제시할 수 있으며, 학교의 장은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학교의 장이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에 대한 지도·감독을 해야 한다.

제39조(시민활동 지원) 교육감은 학생의 인권보장을 위하여 노력하는 시민활동과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그러한 시민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장 학생인권침해에 대한 구제

제40조(학생인권옹호관의 설치) ① 학생인권 침해에 관한 상담 및 구제를 위하여 학생인권옹호관을 둔다.

② 학생인권옹호관은 인권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가지고 있으며 소수자들이 겪는 차별문제에 대하여 높은 감수성을 가지고 있고 학생인권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학생인권심의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교육감이 임명한다. 다만, 처음 선출되는 학생인권옹호관의 경우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학생인권심의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교육감이 임명한다.

③ 학생인권옹호관은 상임 5인 이내로 하며, 교육감이 정하는 각자의 관할지역에서 활동한다.

④ 학생인권옹호관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재임할 수 있다.

⑤ 학생인권옹호관은 학생의 인권에 관한 헌법 및 관련 법령 그리고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비롯한 국제인권규범의 정신에 따라 그 직무를 독립적으로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⑥ 학생인권옹호관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도 개선 권고 등 중요한 사항은 옹호관 회의를 통하여 결정한다.

제41조(겸직금지) ① 학생인권옹호관은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공무원, 교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② 학생인권옹호관은 서울특별시교육청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이나 단체의 임원을 겸할 수 없다.

제42조(학생인권옹호관의 직무) 학생인권옹호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학생인권침해에 관한 상담
2. 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에 대한 조사 및 직권조사
3. 학생인권 침해에 대한 적절한 시정 및 조치 권고
4. 학생인권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권고
5. 제2호 내지 제4호의 내용에 대한 공표
6. 기타 위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

제43조(학생인권옹호관의 복무 등) 학생인권옹호관의 복무,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44조(사무국) ① 학생인권옹호관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 ② 사무국에는 공무원 및 전문조사원 등 학생인권옹호관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한 인원을 둔다.
- ③ 사무국에 배치된 공무원 및 전문조사원은 학생인권옹호관의 지휘에 따라 사무를 처리한다.
-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사무국 및 전문조사원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5조(지역교육청별 상담실) ① 각 지역교육청마다 학생인권상담실을 둔다.

- ② 제1항의 상담실은 학생의 인권에 관한 상담을 하고, 그 결과를 정기적으로 학생인권옹호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조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시급한 경우에는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46조(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 및 조치) ① 학생이 인권을 침해당하였거나 침해당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학생인권옹호관에게 그에 관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구제신청을 받은 학생인권옹호관은 사건에 대하여 조사한 후에 교육청, 지역교육청,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교직원, 학생 및 보호자에 대한 시정권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③ 학생인권옹호관이 제2항의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교육감에게 통보하고, 그 요지를 공표하여야 한다.
- ④ 학생인권옹호관으로부터 시정권고를 받은 교육감, 지역교육청장,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교직원, 학생 및 보호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권고사항을 이행하여야 하고, 조치결과를 즉시 학생인권옹호관 및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학생인권옹호관의 권고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제47조(조사) ① 학생인권옹호관은 제42조 각호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교육청, 지역교육청 및 학교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교직원 및 관계공무원에게 질의할 수 있다.

- ② 학생인권옹호관은 제46조 제1항의 구제신청에 대해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방문조사를 할 수 있다.
- ③ 교직원 및 관계공무원은 제1항의 자료요구 및 질의, 제2항의 현장방문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48조(규정개정심의위원회)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학칙 및 규정을 제·개정하기 위한 심의위원회(이하 "규정개정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 ② 규정개정심의위원회는 교원, 보호자, 인권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전문가, 학생대표로 구성한다.
- ③ 규정개정심의위원회는 학생들의 의견을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수렴하는 과정을 밟아야 한다.
- ④ 규정개정심의위원회는 규정 제·개정을 마친 후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⑤ 교육감은 규정개정의 방향, 절차, 규정개정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지침을 제시할 수 있다.

제49조(규칙) 교육감은 이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위임한 사항과 조례를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제50조(준용규정) 제2장 내지 제3장의 규정은 유아, 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자, 유치원의 교직원 및 보호자 간에 이를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교육감은 학생인권옹호관에 대한 별도의 조례가 제정될 때까지는 규칙의 정한 바에 따라 비상임학생인권옹호관으로 학생인권옹호관 제도를 운용할 수 있으며, 비상임학생인권옹호관의 복무 등에 대하여는 교육감이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② 이 조례가 공포된 이후 6개월 이내에 학교의 장은 제48조의 규정개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헌법」 제31조,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교육기본법」 제12조 및 제13조,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에 근거하여 학생의 인권이 학교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경기도 내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이란 제1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3. “교직원”이란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의 교원 및 같은 조 제2항의 직원을 말한다.
4. “학생의 인권”이란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 중 학생에게 적용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말한다.

제3조(학생의 인권 보장원칙) ①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학생의 인권은 학생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권리이며, 학생의 인권은 이 조례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 학생의 인권에 대한 제한은 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교육의 목적상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학생이 그 제·개정에 참여한 학칙 등 학교 규정으로써 할 수 있다.

제4조(책무) ① 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한 정책을 수립할 때 학생의 인권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설립자 및 경영자, 학교장, 교직원, 학생의 보호자 등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학생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생은 인권을 학습하고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며, 교사 등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과 학교의 설립자 및 경영자는 학생의 교육활동에 적합한 교육시설과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학생의 인권

제1절 차별받지 않을 권리

제5조(차별받지 않을 권리) ①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제1항에 예시한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2절 폭력 및 위협으로부터의 자유

제6조(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① 학생은 따돌림, 집단 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 및 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에서 체벌은 금지된다.

③ 학교와 교육감은 따돌림, 집단 괴롭힘, 성폭력 등 학교폭력 및 체벌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7조(위협으로부터의 안전) ① 학교는 학생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체계를 정비하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학교의 장은 신속하게 피해자를 구조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및 지역주민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3절 교육에 관한 권리

제8조(학습에 관한 권리) ① 학생은 법령과 학칙에 근거한 정당한 사유 없이 학습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② 학교는 교육과정을 자의적으로 운영하거나 학생에게 임의적인 교내외 행사 참석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전문계 고등학교는 현장실습 과정에서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학교와 교육감은 일시적 장애를 포함한 장애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예체능 학생, 학습곤란을 겪는 학생 등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의 자유) ① 학생은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 등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자유롭게 선택하여 학습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학생에게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 등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학교는 방과후학교 등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에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함으로써 교육의 다양성과 학생의 실질적인 선택권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휴식을 취할 권리) ① 학생은 건강하고 개성 있는 자아의 형성·발달을 위하여 과중한 학습 부담에서 벗어나 적절한 휴식을 취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을 강요함으로써 학생의 휴식을 취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학생의 휴식을 취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

제4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정보에 관한 권리

제11조(개성을 실현할 권리) ① 학생은 복장, 두발 등 용모에 있어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두발의 길이를 규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학교는 정당한 사유와 제18조의 절차를 따르지 아니하고는 학교의 규정으로써 제1항의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

제12조(사생활의 자유) ① 학생은 부당한 간섭 없이 개인 물품을 소지·관리하는 등 사생활의 자유를 가진다.

② 교직원은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 등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학생의 동의 없이 소지품 검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교직원이 교육목적으로 필요하여 불가피하게 학생의 소지품 검사를 하는 경우 그 검사는 필요한 최소한의 정도에 그쳐야 하며,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일괄검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교직원 은 일기장이나 개인수첩 등 학생의 개인적인 기록물을 열람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교육목적상 필요한 경우에도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 ④ 학교는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 자체를 금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교는 수업시간 등 정당한 사유와 제18조의 절차에 따라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 및 소지를 규제할 수 있다.
- ⑤ 학교는 다른 방법으로는 안전 등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 여부나 설치 장소에 관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고 설치장소를 누구나 쉽게 알 수 있게 표시하여야 한다.

- 제13조(사생활의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① 학생은 가족, 교우관계, 성적, 징계기록 등 개인적인 정보를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② 학교는 학생에게 교외에서의 이름표 착용을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 ③ 학교는 학생에 관한 정보를 수집·처리·관리함에 있어서 적법하고 적절한 수단과 절차에 따라야 한다.
 - ④ 학교는 교육비 미납사실 등 학생에 관한 개인정보를 본인 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누구든지 학생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함부로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4조(정보에 관한 권리)** ①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 본인에 관한 학교 기록을 언제든지 열람할 권리를 가진다.
- ② 학생은 학교에 대해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 ③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 본인에 관한 기록 중에 부정확한 내용,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내용, 학생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내용 등에 대하여 정정이나 삭제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 ④ 학교는 예·결산 등 학교 재정 관련 정보를 학생이 쉽게 알 수 있는 내용과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5절 양심·종교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

- 제15조(양심·종교의 자유)** ① 학생은 세계관·인생관 또는 가치적·윤리적 판단 등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 ② 학교는 학생에게 양심에 반하는 내용의 반성, 서약 등 진술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학교는 학생에게 특정 종교행사 참여 및 대체과목 없는 종교과목 수강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6조(의사 표현의 자유)** ① 학생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② 학교는 학생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경우 부당하고 자의적인 간섭이나 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학교는 교지 등 학생 언론활동, 인터넷홈페이지 운영 등에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필요한 시설 및 행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절 자치 및 참여의 권리

- 제17조(자치활동의 권리)** ① 동아리 등 학생의 자치적인 활동은 보장된다.
- ② 학교는 학생자치기구의 구성과 소집 및 운영 등 활동에서 자율과 독립을 보장하고 성적 등을 이유로 구성원 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8조(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 참여할 권리)** ① 학생은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② 학교는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여 학칙 등 학교 규정을 제·개정하고, 이를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 ③ 학교는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학생회 등 학생자치기구의 의견제

출권을 보장해야 한다.

- 제19조(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 ① 학생은 학교 운영 및 교육청의 교육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② 학생회 등 학생자치기구 및 학생들의 자발적 결사는 학생의 권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의견을 밝힐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③ 학교장과 교사는 학생대표와의 면담 등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의견을 청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학생대표는 학생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⑤ 학교장과 교육감은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학생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7절 복지에 관한 권리

- 제20조(학교복지에 관한 권리)** ① 학생은 학습부진, 폭력피해, 가정위기, 비행일탈 등 각종 위기상황 극복과 적성발견, 진로모색 등 정체성 발달을 위하여 학교에서 상담 등 적절한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② 학교와 교육감은 빈곤 학생, 장애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등 경제·사회·문화적 사유로 권리 실현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배려하는 데에 우선적으로 예산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 ③ 학교와 교육감은 학생이 사회복지에 관한 권리를 향유하기 위해 필요한 상담 및 그에 따른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수립 또는 정비하여야 한다.
 - ④ 학교와 교육감은 특별한 상담 및 돌봄이 필요한 학생을 위하여 아동복지 및 인권과 관련된 지역 사회의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특히 보호자를 교육하고 보호자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야 한다.

- 제21조(교육환경에 대한 권리)** ① 학생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② 학교는 적절한 양과 질의 도서 및 도서관 공간 확보, 청결한 환경의 유지, 화장실과 적절한 탈의 및 휴게 공간의 확보, 적절한 냉난방 관리, 녹지공간 확대 등 최적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22조(문화활동을 향유할 권리)** ① 학생은 다양한 문화활동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 ② 학교는 학생의 다양한 문화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 공연, 전시 등의 문화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야 한다.
 - ③ 교육감은 제2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학교 및 지역의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23조(급식에 대한 권리)** ① 학생은 안전한 먹을거리에 의한 급식을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② 학교는 급식재료, 급식업체 등 급식 관련 정보를 학생에게 제공하고, 정기적으로 급식에 관한 의견조사를 실시하며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 ③ 학교와 교육감은 친환경, 근거리 농산물에 기초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④ 교육감은 직영급식과 의무교육과정에서의 무상급식을 실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24조(건강에 관한 권리)** ① 학생은 최적의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아플 때 적절한 치료를 받고 보건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건강권을 가진다.
- ② 여학생은 생리로 인한 고통 때문에 결석하거나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며, 학교는 생리 중에 있는 여학생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적절한 배려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③ 학교는 학생이 아플 때 이용할 수 있는 보건실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절 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 제25조(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① 학생의 징계는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기구의 구성, 소명의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 재심요청권의 보장 등 적법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 ② 학교는 징계와 그 전후의 절차에서 징계대상 학생의 회복과 복귀를 목표로 하여야 하며, 그것을 위하여 지역사회, 보호자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 ③ 학교는 징계 내용을 공고하여서는 아니 되며, 상벌점제를 포함한 학생에 대한 지도 방법 및 절차에서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절 권리침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 제26조(상담 및 조사 등 청구권) ①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학생의 인권 침해에 대하여 학생인권옹호관에게 상담 및 조사 등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 ②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모든 학생의 인권 관련 사항에 대하여 관계 기관에 문서 등으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 ③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제1항과 제2항의 청구권과 청원권 행사에 관하여 비밀을 보장받으며, 그 행사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 ④ 학생인권옹호관 및 학교장과 교육감은 청구 및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지며, 그 처리 결과를 청구 및 청원한 사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절 소수 학생의 권리 보장

- 제27조(소수 학생의 권리 보장) ① 학교와 교육감은 빈곤, 장애,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운동선수 등 소수 학생이 그 특성에 따라 요청되는 권리를 적정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 ② 학교와 교육감은 소수 학생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식을 해소하는 데 필요한 인권교육프로그램과 소수 학생을 위한 진로 및 취업 프로그램을 별도로 마련하여야 한다.
- ③ 학교와 교육감은 장애 학생에게 교내의 교육활동에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고 참여를 보장하며, 적절한 교육 및 평가 방법을 제공하는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 ④ 학교와 교육감은 빈곤 학생이 가정형편으로 말미암아 수탁여행 등 교육활동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⑤ 학교와 교육감은 다문화가정 학생에게 교육활동에서 언어문화적 차이 등으로 인한 차별 없이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다문화가정 학생의 전입학 기회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장 학생인권의 진흥

제1절 인권교육

- 제28조(경기도 학생인권의 날) ① 교육감은 학생의 인권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경기도 학생인권의 날을 지정할 수 있다.
- ② 교육감은 학생인권의 날의 취지에 맞는 사업을 실시하고, 학생, 교원 및 도민의 참여를 유도하여야 한다.
- 제29조(홍보) 교육감은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내용과 이 조례에서 보장하고 있는 내용 등 학생의 인권에

대한 설명서와 교육용 교재를 일반인용, 중·고등학생용, 초등학생용으로 제작·배포하는 등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0조(학교 내 인권교육·연수) ① 학교는 학생에게 학생의 인권에 관한 교육을 학기당 2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전문계 고등학교 현장실습, 학생 아르바이트의 증가 등을 고려하여 근로권 관련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② 학교는 교원을 대상으로 학생의 인권에 관한 교원연수를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③ 학교는 학생 스스로 행하는 자율적인 인권학습활동을 보장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 제31조(교원에 대한 인권 연수 및 지원) ① 교육감은 교원에 대한 각종 연수에 학생의 인권에 관한 내용을 편성하여야 한다.
- ② 교육감은 학교의 인권교육과 교원 연수를 위한 교육자료 및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 제32조(보호자 교육) ① 학교는 보호자에 대하여 학생의 인권에 관한 교육 또는 간담회를 연 2회 이상 추진하여야 한다.
- ② 교육감은 보호자에 대한 인권교육 자료를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제2절 인권실천계획 등

- 제33조(인권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매년 경기도내 학생인권 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조사 결과가 확정되면 이를 공표하고 경기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34조(실천계획의 작성) ① 교육감은 학생의 인권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교육활동과 적절한 수준의 교육복지·휴식 시설을 갖추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교육감은 제1항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학생의 인권 등의 향상을 위한 실천계획을 3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계획을 수립할 때는 학생인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공청회, 토론회, 지역순회 간담회 등을 통하여 학생, 교사, 보호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 제35조(경기도학생인권심의위원회) ① 학생의 인권에 관한 경기도교육청의 정책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학생인권심의위원회를 둔다.
- ② 경기도학생인권심의위원회는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학생인권옹호관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 ③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1. 교육, 아동복지, 청소년, 의료, 법률, 인권 전문가로서 관련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또는 공개모집절차를 통해 신청을 받은 사람
 2. 학생참여위원회의 위원
 3. 도민 중에서 학생인권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고 참여의지가 있는 사람으로서 공개모집절차를 통해 신청을 받은 사람
 4. 경기도교육청의 학생인권 관련 담당 공무원
- ④ 경기도학생인권심의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두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⑤ 경기도학생인권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생인권실천계획의 수립
 2. 학생의 인권에 관한 제도개선
 3. 기타 학생의 인권 신장을 위하여 교육감이 제안한 사항
- ⑥ 위원회 활동의 효율성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5항 각 호의 기능 중 일부를 소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⑦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36조(학생참여위원회) ① 교육감은 학생과 관련된 정책에 대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경기도학생참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경기도학생참여위원회는 10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학생참여위원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모집한 학생들 중에서 추첨을 통하여 선발한다. 다만, 위원회의 구성을 다양하게 하고 소수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20명 이내의 범위에서 별도의 절차를 밟아 교육감이 위촉할 수 있다.

④ 경기도학생참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교육감 및 학생인권옹호관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1. 경기도학생인권조례의 개정에 관한 사항
2. 학생인권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학생인권실천계획에 관한 사항
4. 기타 학생인권 실현 및 학생참여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 ⑤ 교육감은 지역교육청별로 학생참여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37조(학교별 평가 및 지침 제시) ① 교육감은 2년마다 학교별 학생인권실태 현황을 조사하고, 그 개선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2장에서 규정하는 권리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하면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여 각 학교에 제시할 수 있으며, 학교는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8조(시민활동 지원) 교육감은 학생의 인권보장을 위하여 노력하는 시민활동과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그러한 시민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장 학생인권침해에 대한 구제

제39조(학생인권옹호관의 설치) ① 학생인권 침해에 대한 상담 및 구제를 위하여 학생인권옹호관을 둔다.

② 학생인권옹호관은 학생인권 관련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경기도학생인권심의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교육감이 임명한다.

③ 학생인권옹호관은 상임 5명 이내로 하며, 교육감이 정하는 각자의 관할지역에서 활동한다.

④ 학생인권옹호관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학생인권옹호관은 학생의 인권에 대한 헌법 및 관련 법령 그리고 「유엔 아동권리에 관한 협약」을 비롯한 국제인권 규범의 정신에 따라 그 직무를 독립적으로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⑥ 학생인권옹호관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도 개선 권고 등 중요한 사항은 학생인권옹호관 회의를 통하여 결정한다.

제40조(겸직금지) ① 학생인권옹호관은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공무원, 교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② 학생인권옹호관은 경기도교육청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이나 단체의 임원을 겸직할 수 없다.

제41조(학생인권옹호관의 직무) ① 학생인권옹호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학생인권침해에 관한 상담
2. 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에 대한 조사 및 직권조사
3. 학생인권 침해에 대한 적절한 시정 및 조치 권고

4. 학생인권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권고

5.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내용에 대한 공표

6. 기타 위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학생인권옹호관은 그 청구를 각하할 수 있다.

1. 제3자가 한 조사청구에 대해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
2. 조사나 상담이 청구될 당시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권리구제절차나 조정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3. 조사청구가 익명 또는 가명으로 제출된 경우
4. 그 밖에 학생인권옹호관이 상담 및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2조(사무기구 등) ① 학생인권옹호관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사무기구를 둔다.

② 사무기구에는 공무원 및 전문조사원 등 학생인권옹호관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한 인원을 둔다.

③ 사무기구에 배치된 공무원 및 전문조사원은 학생인권옹호관의 지휘에 따라 사무를 처리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사무기구 및 전문조사원에 관한 사항과 학생인권옹호관의 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43조(지역교육청별 상담실) ① 각 지역교육청마다 학생인권상담실을 둔다.

② 제1항의 상담실은 학생의 인권에 관한 상담을 하고, 그 결과를 정기적으로 학생인권옹호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조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시급한 경우에는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44조(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 및 조치) ① 학생이 인권을 침해당하였거나 침해당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학생인권옹호관에게 그에 관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구제신청을 받은 학생인권옹호관은 사건을 조사한 후에 본청, 지역교육청, 학교 및 교직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학생인권옹호관이 제2항의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교육감에게 통보하고, 그 요지를 공표하여야 한다.

④ 학생인권옹호관으로부터 시정권고를 받은 본청, 지역교육청, 학교 및 교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권고사항을 이행하여야 하고, 조치결과를 즉시 학생인권옹호관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학생인권옹호관의 권고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제45조(조사) ① 학생인권옹호관은 제41조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청, 지역교육청 및 학교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교직원 및 관계공무원에게 질의할 수 있다.

② 학생인권옹호관은 제44조제1항의 구제신청에 대해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방문조사를 할 수 있다.

③ 교직원과 관계공무원은 제1항의 자료요구 및 질의, 제2항의 현장방문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46조(규정개정심의위원회) ① 학교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학칙 및 규정을 제·개정하기 위한 심의위원회(이하 “규정개정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② 규정개정심의위원회는 교원, 보호자, 인권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전문가, 학생대표로 구성한다.

③ 규정개정심의위원회는 학생들의 의견을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수렴하는 과정을 밟아야 한다.

④ 규정개정심의위원회는 규정 제·개정을 마친 후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교육감은 규정개정의 방향, 절차, 규정개정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지침을 제시할 수 있다.

제47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위임한 사항과 이 조례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교육감은 제39조에 따른 상임 학생인권옹호관에 관한 제도가 정비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학생인권옹호관을 비상임으로 운용할 수 있다.

② 이 조례가 공포된 이후 6개월 이내에 학교는 제46조의 규정개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4.

광주광역시학생인권조례(안)

2010. 1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의 인권에 관한 광주광역시교육청 및 관할 학교와 교사·학생·학부모의 책임과 역할을 정하고 학생 인권 보장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 인권을 증진시키고 인권이 존중되는 학교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권"이란 「세계인권선언」 및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2. "학교"란 광주광역시 내에 소재한 「초·중등 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관을 말한다.
3. "학생"이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 재적 중인 자를 말한다.
4. "교사"란 「초·중등 교육법」 제19조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모든 교원과 직원, 「교육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를 말한다.
5. "학부모"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학생"의 부모, 친권자나 후견인, 또는 보호·양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고 증진시키기 위해 장기적인 계획과 이를 구현하는 종합적인 정책을 시행하여야 하며, 학생인권의 보장을 위해 노력하는 각종 활동에 대해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 ② 학교와 교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감의 정책에 협력하고 당해 시설 내에서 인권의 역사와 정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며 학생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③ 학생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규범을 준수하고 생명과 인간의 존엄을 중시하며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④ 학부모는 가정에서 인권 교육의 중요성을 자각하고 학교와 협력하여 학생이 올바른 인권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인권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학생의 인권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보장하고 증진시키기 위해 학생인권증진계획(이하 "인권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인권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학생 인권 보장 및 증진의 기본 방향
2. 학생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한 단계별 시책 및 사업 계획
3. 학생 인권 보장 및 증진 활동을 위한 자원 조달 방안
4. 교사, 학생, 학부모의 인권 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 및 환경 조성 방안
5. 학생 인권 관련 실태조사와 인권 침해 요소의 현황 및 개선 방안
6. 학교 평가에서 학생 인권 보장 실태를 반영하는 방안
7. 그 밖에 학생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주요 사항

- ③ 교육감은 인권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 ④ 교육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결과를 제19조에 따른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장 학생의 인권

제5조(학생의 지위) 학생은 인간으로서 내재적 가치와 존엄성을 지닌 자율적인 존재이며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의거 인격적 주체로서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 제6조(학습에 관한 권리)** ① 학생은 교수·학습 과정에서 인격적 주체로서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② 학생은 법령과 학칙에 근거한 정당한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학습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 ③ 학생은 자발적이고 명시적인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강제적인 교육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④ 학교는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을 운영함으로써 학생의 실질적인 선택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 ⑤ 학교는 교육과정을 변칙적으로 운영하거나 임의적인 교내·외 행사 참석을 학생에게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 ⑥ 교육감과 학교는 일시적 장애를 포함한 장애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등 학생 소수자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차별 받지 않을 권리) 학생은 성별, 종교, 민족, 언어, 나이, 신체조건, 경제적 여건,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평등한 대우와 배움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 제8조(건강과 안전에 관한 권리)** ① 학생은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환경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② 학생은 안전한 먹을거리에 의한 급식을 제공 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③ 학생은 따돌림, 집단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 및 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 ④ 학생은 아플 때 적절한 치료를 받고 보건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⑤ 교육감과 학교는 친환경, 근거리 농산물에 기초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⑥ 학교는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상시 정비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⑦ 교육감과 학교는 학생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과 안정 및 성장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과 치유를 위해 관계 기관 및 지역 주민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9조(신체의 자유)** ① 학생은 존엄한 인격체로서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 ② 학생에게 모욕적인 대우나 체벌, 강제노동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 ③ 학생은 머리 모양, 복장 등 자신의 생활양식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 ④ 학교는 제13조의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학교의 규정으로써 제3항의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

- 제10조(사생활과 개인 정보를 보호 받을 권리)** ① 학생은 소지품과 사적 기록물, 사적 공간 등과 관련한 사생활의 비밀을 유지하고 감시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 ② 학생은 자기가 원하는 사람과 관계를 맺고 그 관계를 둘러싼 감정을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③ 학생은 과도하게 자기 정보를 수집당하지 않고, 정보의 유출로 인한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④ 학생은 자신에게 유익하고 필요한 정보에 다양하게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 ⑤ 교사는 학생과 교사의 안전 등을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필요 최소한의 정도로서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소지품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⑥ 학교는 학생의 휴대폰을 비롯한 전자기기의 소지 자체를 금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교육활동과 학생들의 수업에 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13조의 절차에 의해 전자기기 사용을 규제할 수 있다.
- ⑦ 학교는 학생에 관한 정보를 적법하고 적절한 수단과 절차에 의하여 수집, 운용하여야 한다.

제11조(사상과 양심, 종교의 자유) ① 학생은 자유롭게 생각하고 자신의 생각과 양심에 따라 자유롭게 행동할 권리를 가진다.

- ② 학생은 종교의 자유를 누리고 특정 종교를 강요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 ③ 학교는 학생에게 양심에 반하는 내용의 반성과 서약 등의 진술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의사 표현의 자유) ① 학생은 다양한 수단을 통해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그 의견을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② 학생은 서명이나 설문조사 등을 통해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모을 권리를 가진다.
- ③ 학교는 학생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경우 부당하고 자의적인 간섭이나 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학교는 인터넷 및 인쇄 매체를 통한 학생들의 언론활동을 최대한 보장하고, 필요한 시설 및 행·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자치와 참여에 관한 권리) ① 학생은 자신을 대표하는 기구를 비롯하여 다양한 모임을 자율적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권리를 가진다.

- ② 학생은 직접, 또는 대표를 통해 학교생활 및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표명하고 실질적 참여를 위한 권리와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③ 학교는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실질적으로 수렴하여야 하며, 학생회 등 학생자치기구의 의견제출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 ④ 학교는 학생자치기구의 자율적인 운영과 집행을 보장하고, 필요한 시설 및 행·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⑤ 학교는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 대표를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 ⑥ 교육감은 학생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결정할 때에 학생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14조(휴식과 문화 활동에 관한 권리) ① 학생은 개성 있는 자아의 발달을 위한 적절한 휴식과 놀이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 ② 학생은 건강한 문화를 형성하고 누리기 위해 공간 및 행·재정적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③ 학교는 학생의 다양한 문화 활동을 위하여 교육, 공연, 전시, 축제 등의 문화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야 한다.
- ④ 교육감은 제3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⑤ 교육감은 학생의 휴식을 취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

제15조(교육복지에 관한 권리) ① 학생은 학습부진, 폭력피해, 비행일탈, 가정해체 등 각종 위기 상황의 극복을 위하여 상담 및 치료를 비롯한 적절한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② 교육감과 학교는 빈곤, 장애, 다문화 등 가정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사유로 권리 실현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배려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우선적으로 예산을 배정하여야 한다.
- ③ 교육감과 학교는 특별한 상담과 돌봄이 필요한 학생들을 위하여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실질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의 대상이 되는 학생의 학부모는 제안된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16조(적법한 징계 절차를 누릴 권리) ① 학생은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기구의 구성, 소명의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 재심요청권의 보장 등 인권의 기준에 부합하는 정당한 규정과 적법한 징계 절차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② 징계와 그 전후의 절차는 징계대상 학생의 회복과 복귀를 목표로 진행되어야 하며, 학교는 이러한 목표를 위해 지역사회, 보호자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17조(소수 학생의 권리) ① 교육감과 학교는 빈곤, 장애, 다문화 가정 학생 등 소수 학생이 그 특성에 따라 요청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과 학교는 소수 학생에 대한 편견과 차별 의식을 해소하기 위한 인권교육 등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과 학교는 소수 학생이 교육활동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고 적절한 교육 및 평가방법을 제공하는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18조(학생 인권 보장의 원칙)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학생의 인권은 학생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권리이며, 이 조례에 열거되지 아니 한 학생의 인권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의거 총체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제3장 학생인권위원회

제19조(학생인권위원회) 교육감은 학생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광주광역시 학생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0조(위원회의 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생인권증진계획의 연도별 시행 결과에 대한 심의
2. 학생 인권에 관한 조례(입법과정 중에 있는 조례안을 포함한다)·제도·정책·관행의 조사와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 표명
3. 학생인권침해의 유형·판단기준 및 그 예방조치 등에 관한 지침의 제시 및 권고
4. 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에 대한 조사 및 시정권고
5. 학생의회의 지원
6. 학교생활규정에 관한 점검 및 권고
7. 그 밖에 학생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2명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시교육청 교육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학생 인권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70%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

1.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지역사무소가 추천하는 사람 1명
2. 교육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 1명
3. 청소년 단체 및 학부모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2명
4. 인권단체에서 추천한 인권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 2명
5. 교원노동조합 및 교원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2명
6. 학생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7. 교육청의 학생인권 담당 공무원 1명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가운데 호선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의 결원이 생겨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의 남은 임기가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정기회 : 연4회 이상
2. 임시회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3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그 업무 중 일부를 수행하기 위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심의사항을 연구·검토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③ 소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4조(사무국) ① 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공무원 및 전문조사원 등 위원회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한 인원을 둔다.

③ 사무국에 배치된 공무원 및 전문조사원은 위원장의 지휘에 따라 사무를 처리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사무국 및 전문조사원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5조(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활동이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인권에 반하는 활동으로 위원회의 품위에 손상이 되었다고 위원회가 의결한 경우

제26조(학생인권영향평가) ① 위원회는 교육감이 제정, 입안하려고 하는 조례나 정책 등이 학생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할 때에는 학생인권영향평가서(이하 "평가서"라 한다)를 작성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교육감이 특별한 사유 없이 평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평가서 검토가 필요할 경우, 교육감에서 추진 중인 조례나 정책 등의 개선 및 중단을 권고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요구를 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7조(학생 인권의 상담) ① 각 지역교육청별로 학생인권상담실을 둔다.

② 제1항의 상담실은 학생의 인권에 관한 상담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기적으로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조속한 조치가 필요한 등 시급한 경우에는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28조(학생 인권 침해의 구제 및 조치) ① 위원회는 학생이 인권 침해에 대해 상담 및 구제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연락통신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학생이 인권을 침해당하였거나 침해당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위원회에 그에 관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구제신청을 받은 위원회는 사건에 대하여 조사한 후에 교육청, 학교 및 교사에 대한 시정권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교육감에게 통보하고, 그 요지를 공표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로부터 시정권고를 받은 교육청, 학교 및 교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권고사항을 이행하여야 하고, 조치결과를 즉시 위원회 및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9조(학생 인권 침해의 조사) ① 위원회는 제20조 각호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교육청 및 학교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교사 및 관계공무원에게 질의할 수 있다.

② 제27조 제2항의 구제신청에 대해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방문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을 방문 조사할 경우 학생 및 관계자와 면담할 수 있고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구술 또는 서면으로 사실이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30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광주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1조(운영세칙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장 학생의회

제32조(학생의회) 교육감은 시 교육정책에 대하여 학생의 의견을 구하고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광주광역시 학생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33조(의회의 구성) ① 의회는 각급 학교의 학생 대표와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으로 구성한다.

② 의원 가운데 의장 1인과 부의장 3인을 호선하며, 의장단은 회장, 부회장을 포함하여 임원을 10인 이내로 둘 수 있다.

③ 의장단의 임기는 1년이고 연임할 수 없다.

④ 임원이 제36조에 의하여 결원이 생긴 경우 새로이 위촉하되 그 임기는 전임 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4조(의회의 운영) ① 의회는 그 주체인 학생이 정한 방법에 의하여 자주적으로 운영한다.

② 의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의장이 소집한다.

1. 정기회 : 연4회 이상

2. 임시회 :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③ 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5조(의원의 임무) ① 의원은 해당 학교의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의회에 성실히 참여하고, 학생들의 인권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36조(의원의 자격 상실) 의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1. 전학 등으로 소속을 달리한 때

2. 퇴학 등으로 학생의 지위를 상실한 때

3. 질병 등 일신상의 이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

4. 재적의원 2/3의 결의로 자격상실을 결의한 때

제37조(의회의 역할) ① 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교육감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1. 광주광역시학생인권조례의 개정에 관한 사항

2. 학생인권증진계획에 관한 사항

3. 학생인권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4. 기타 학생인권 실현 및 학생참여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 교육감은 제1항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을 존중하고 시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8조(의회에의 지원) ① 교육감과 학교는 의회에 학생 참여를 유도하고 회의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의회의 안정적인 활동을 위한 공간을 설치하고 필요한 기자재를 배치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의회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고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④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국은 의회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실무적인 지원을 행하여야 한다.

제5장 인권 교육 및 연수

제39조(학교 내 인권교육 및 연수) ① 학교는 학기당 2시간 이상 학생인권 관련 학생 교육과 교사 연수를 연간 계획에 의해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학교는 학생 스스로 행하는 자율적인 인권 학습활동을 보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40조(교사에 대한 인권 연수) ① 교육감은 교육청 주관의 모든 자격연수에서 학생 인권에 관한 교육 내용을 2시간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교육청 주관의 교사 직무 연수에서 학생 인권에 관한 교육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학교의 학생 교육과 교사 연수를 위한 개발 및 지원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제41조(학부모 교육) ① 학교는 학부모에 대하여 학생의 인권에 관한 교육 또는 간담회를 연 2회 이상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부모에 대한 인권교육 자료를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제6장 기타

제42조(시민활동 지원) 교육감은 학생의 인권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는 시민 활동을 지원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구성) 제3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원회는 이 조례가 공포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구성하여야 한다.

교과부의 학생인권 관련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추진 과정과 문제점 (2010. 10. 20,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자료)

학생인권에 관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 추진 과정

- ▶ 2010.08.18 : <학생권리의 보장방안 마련을 위한 공개 토론회>를 개최(장소 : 서울교육문화회관 거문고홀)
 - '학생권리와 학교교육의 사명,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라는 주제로 교육과학기술부가 후원
 - 한국교육개발원으로부터 위탁사업을 받아 정책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교육법연구팀(연구책임자 : 강인수 수원대 부총장)이 주최 -발제자 : 강인수 수원대 부총장, 초·중등교육법과 시행령 일부개정 시안 발표

- ▶ 2010.09.15 : 교과부, 학교지원국 학교생활문화팀장과 관계자 전교조 방문
 - 학생인권과 관련한 초·중등교육법과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권역별 공청회를 거쳐 연말에 입법 발의 예정, 내년 2월까지 개정 완료하여 3월부터 시행할 계획을 공지
 - 현재 국회에 상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하여 여·야 의원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어 통과되기에 어려움이 없으리라 기대한다는 입장표명. (학교 규칙에 관한 교육감 인가권 폐지)

- ▶ 2010.09.16 : 교과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사무실 방문

- ▶ 2010.10.07 : 교과부, <학생권리신장방안 마련 관계자 회의> 15:00, 장소(교과부, 학교교육지원본부장실)
 - 학생권리신장 관련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협의회
 - 8월 18일 교육법연구팀(강인수 교수)의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교과부는 시행령으로 개정하려는 안을 최종 마련함.
 - 권역별 공청회 계획을 없애고 협의회로 대체.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일부 개정안의 문제점

1. 시행령 제31조의5제2항은 헌법 제75조에 위배

헌법 제75조에 따르면 시행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사항만을 규율할 수 있다. 특히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침해할 소지가 있는 사항을 규율하는 시행령은 보다 더 엄격한 법률의 수권을 요구하고 있다.

학생인권 관련 초중등교육법은 '학칙, 학생징계사항'만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을 뿐 '그 외 일반적인 학생권리제한사항'은 시행령에 위임한 바가 없다. 따라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만으로 일반적인 학생권리한계 규정을 두는 것은 위헌이다.

2. 포장은 학생권리신장 방안, 내용은 학생 권리침해·징계강화·퇴학용이로 가득

교과부는 시행령 개정의 추진 배경을 '학교교육의 자율성과 학생권리 보호를 위한 조화로운 법적 기반 구축과 학생을 권리의 주체이자 책임의 주체로 인식할 수 있는 균형 있는 기준 마련을 통한 새로운 학교생활 문화를 창조'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핵심 내용 대부분이 학생 퇴학 및 징계를 강화하고 학생 권리의 한계를 규정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

3. 법질서 무시한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학생인권조례 무력화 시도

초중등교육법 개정의 경우 국회의 심의와 의결이라는 엄격한 절차를 거치는 것과 달리, 시행령은 행정부의 의견으로 일사천리로 진행된다. 결국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의도적으로 다양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개정의 처리속도를 높여 독단적 개정의도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결국 현재 추진되고 있는 시도별 학생인권조례를 무력화하기 위한 교과부의 의도가 드러났다.

4. 학생을 교육의 주체가 아닌, 통제와 규율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개정안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조항들은 학생의 징계와 퇴학처분의 규율을 확대, 강화하고 있다. 현재 '학교폭력에 방및대책에관한법률'을 따르면 출석정지와 전학 등은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 조항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출석정지와 전학을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도 포함함으로써 폭력 행위에 한정된 징계규정을 학생들의 모든 행위에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결국 학생을 학교 밖으로 내모는 징계를 신설, 강화함으로써 보다 강력한 학생 통제수단을 제도화하는 것이다. 그리고 '교육활동 보장과 질서유지'라는 모호하고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문구로 학생에 대한 징계 강화의 조건을 만들어 놓고 있다.

현재 교과부가 추진하고 있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분석 및 의견

현행	개정안
<신설>	제31조의 5(학생권리 보장 및 한계) ① 학교의 장은 법 제18조4의 규정에 의하여 학생의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의 자유 등 학생 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교육활동을 보장하고, 질서를 유지하며 타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학생의 권리 행사를 제한할 수 있다.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①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신설>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①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1.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규정 ④ 제1항제7호의 사항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미리 학생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시행령 제31조의 5는 법률상 근거 없음.

즉, 헌법 제75조에 의하면, 시행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사항만을 규율할 수 있음.(특히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침해할 소지가 있는 사항을 규율하는 시행령은 보다 더 엄격한 법률의 수권을 요함)

학생인권 관련 초·중등교육법은 '학칙, 학생징계사항'만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을 뿐, '그 외 일반적인 학생권리제한사항'을 시행령에 위임한 바 없음. 따라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만으로 일반적인 학생권리한계규정을 둘 수는 없음.

결국 시행령상 일반적인 학생권리한계규정을 두는 것은 아무런 법률의 수권이 없는 것으로서, 위임명령의 한계를 벗어난 것임.

■ 안 제9조는 학칙으로 하여금 학생의 학교생활 전반을 규율하도록 하면서도, 학칙에 대한 학생 참여권은 제한적으로만 인정하고 있음. 즉, 학칙 중 학생포상과 학생징계에 관한 사항에 한하여 학생의 의견을 듣는 정도이지 참여할 권리는 주지 않음.

그러나 위와 같이 학칙의 규율범위와 그 규범적 효력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학칙의 제·개정 절차에 대한 학생의 참여권은 반드시 필요함. 따라서 학생의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며, 특별히 포상과 징계 관련 학칙의 제·개정의 경우에만 이를 제한할 이유가 없음.

현행	개정안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① 법 제1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의 징계를 할 수 있다. 1. 학교내의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 이수 4. 퇴학처분 ④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외의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행하여야 한다. 1.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2. 정당한 이유없이 결석이 잦은 자 3. 기타 학칙에 위반한 자 <개정>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① 법 제1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징계를 할 수 있다. 1. 학교내의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 이수 4. 출석 정지 5. 퇴학처분 ④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 외의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한하여 행하여야 한다. 1. 범죄행위 또는 이에 상응하는 행위를 한 학생 2. 학교의 교육활동이나 질서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를 한 학생 3. 퇴학보다 경한 징계가 잦은 학생 4. 기타 학칙에서 퇴학 사유에 해당하는 학생

■ 제31조(학생의 징계 등)제1항제4호 출석정지 조항을 신설하였음. 현재, '학교폭력에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제1항제8호 10일 이내의 출석정지'는 학교에서 일어나는 폭력에 관한 사항에만 적용이 되는 것임. 그러나 이번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의 개정안에 출석정지를 추가함으로써 학생의 모든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에서 출석정지를 할 수 있도록 징계 규정을 확대하고 있음. 문제는 이러한 규정은 사실상 '학생의 학습권 박탈'과 '추방'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제31조제4항제1호는 학생이 범죄행위 또는 이에 상응하는 행위를 했다면 바로 퇴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예를 들어, 한 학생이 다른 학생과 금품을 갈취하거나 절도를 한 사실이 발각이 되면 바로 퇴학처분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임. 위의 예는 학교에서 다반사로 일어나는 일이고 학생이 저지르는 여러 실수나 바르지 못한 행위들은 사회적으로 범죄행위에 관한 것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고 그런 행위를 개선하도록 교과부와 학교는 많은 노력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개정을 통하여 학생을 교육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통제와 퇴출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 여지없이 드러난 조항임.

■ 제31조제4항제2호는 '학교의 교육활동이나 질서'라는 모호하고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사항으로 학생을 퇴학처분을 할 수 있는 법규적 효력을 가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교과부)

현행	개정안
<p>⑦ 학교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지도를 하는 때에는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훈육·훈계등의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p> <p><개정></p>	<p>⑦ 학교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지도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지도 방법으로 하되,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지도 방법은 제외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훈계 2. 학생·보호자와 상담 3. 학교내 자율적인 조정 4. 별도 학습 조치 또는 특별 과제 부여 5. 점심시간 또는 방과 후 근신 조치 6. 학업 점수 감점 7. 학급교체
<p><신설></p>	<p>⑩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징계를 대신하여 다른 학교로 전학하도록 할 수 있다.</p>

■ 제31조(학생의 징계 등)제7항제6호 '학업 점수 감점'하는 지도 방법은 평가로 학생을 통제하는 것으로 해서도 않되지만 법령으로 두는 것은 강력한 학생 통제 수단이 됨.

■ 제31조(학생의 징계 등)제10항은 '다른 학교로 전학'이 가능하도록 신설을 하였음. 징계 전학은 '학교폭력예방법및대책에관한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제1항제4호에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이 사항을 시행령으로 명시할 하였음. 전학조치는 학교폭력이라는 사한에 관한 것을 초·중등교육법시행령으로 둬으로써 학교폭력행위에 한정된 처분을 모든 학교생활행위로 확대하여 학생을 징계하도록 확대 시킨 것임.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라는 모호하고 자의적인 해석이 될 수 있는 문구로 학생을 다른 학교로 전학을 할 수 있는 법규적 효력을 발휘한다. 이것으로 학교의 애매하고 자의적인 판단 근거로 학생들을 과도한 징계를 하거나 학교 밖으로 내모는 결과를 초래함.

현행	개정안
<p><신설></p>	<p>제31조의 5(학생권리 보장 및 한계) ① 학교의 장은 법 제18조4의 규정에 의하여 학생의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의 자유 등 학생 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p> <p>② 학교의 장은 교육활동을 보장하고, 질서를 유지하며 타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학생의 권리 행사를 제한할 수 있다.</p>
<p>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①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업연한·학년·학기 및 휴업일 2.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3. 교과·수업일수 및 고사와 과정수료의 인정 4. 입학·재입학·편입학·전학·휴학·퇴학·수료 및 졸업 5.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6. 수업료·입학금 기타의 비용징수 7. 학생포상 및 학생징계 8.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9. 학칙개정절차 10. 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p><개정></p>	<p>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①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업연한·학년·학기 및 휴업일 2.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3. 교과·수업일수 및 고사와 과정수료의 인정 4. 입학·재입학·편입학·전학·휴학·퇴학·수료 및 졸업 5.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6. 수업료·입학금 기타의 비용징수 7. 학생포상 및 학생징계 8.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9. 학칙개정절차 10. 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11.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규정
<p><신설></p>	<p>④ 제1항제7호의 사항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미리 학생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p>
<p>제31조(학생의 징계 등) ① 법 제1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의 징계를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교내의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이수 4. 퇴학처분 <p>④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외의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행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품행이 불량하여 개선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2. 정당한 이유없이 결석이 잦은 자 3. 기타 학칙에 위반한 자 	<p>제31조(학생의 징계 등) ① 법 제1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징계를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교내의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이수 4. 출석 정지 5. 퇴학처분 <p>④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 외의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한하여 행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범죄행위 또는 이에 상응하는 행위를 한 학생 2. 학교의 교육활동이나 질서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를 한 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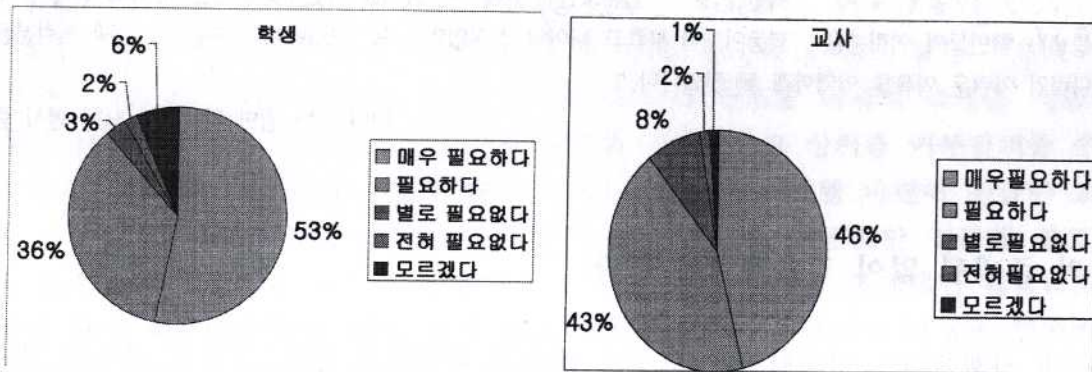
<p><개정></p> <p>⑦학교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지도를 하는 때에는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훈육·훈계등의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p> <p><개정></p>	<p>3. 퇴학보다 경한 징계가 잦은 학생</p> <p>4. 기타 학칙에서 퇴학 사유에 해당하는 학생</p> <p>⑦학교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지도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지도 방법으로 하되,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지도 방법은 제외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훈계 2. 학생·보호자와 상담 3. 학교내 자율적인 조정 4. 별도 학습 조치 또는 특별 과제 부여 5. 점심시간 또는 방과 후 근신 조치 6. 학업 점수 감점 7. 학급교체
<p><신설></p>	<p>⑧ 제7항에 따른 지도 방법은 학교장이 학칙으로 정하되, 제7항 5호 및 6호, 7호를 적용하여 지도할 경우 보호자에게 알리고 필요한 협력 요청하여야 한다.</p>
<p><신설></p>	<p>⑨ 제1항에 따라 학생을 징계할 때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 1명을 포함한 다음 각호의 7명 이내의 학생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당학교의 교감 2. 해당학교의 교사 중 학생상담 및 생활 지도의 경력이 있는 교사 5~6명 3. 필요한 경우 학교장이 경찰, 변호사, 의사 등을 위촉할 수 있음
<p><신설></p>	<p>⑩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징계를 대신하여 다른 학교로 전학하도록 할 수 있다.</p>

학생인권조례시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문 보완

- 배경내(인권교육센터 '들')

1. 학생인권조례 앞에서 서성이는 마음들

- 지난 10월, 학생인권조례제정서울운동본부가 참교육연구소에 의뢰해 교사 1578명, 학생 1885명, 학부모 95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권에 관한 학생, 교사, 학부모 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생인권조례가 '매우 필요하다'고 답한 학생이 53.6%, 교사는 45.8%였고, '필요하다'고 답한 학생이 35.6%, 교사가 42.9%로 매우 높은 동의율을 보였다. 학부모도 '매우 필요하다'가 26.6%, '필요하다'가 61.0%로 집계됐다. 그러나 이 수치를 정말 마음저 밑바닥에 있는 학생인권에 대한 우려와 주저함이 해소되었다는 증거로 볼 수 있을까? 학생인권조례가 진보교육감의 정책이고 우리가 추대한 교육감이니 실현시켜야 한다는 수동적 합의 수준은 아닐까? 사실 자신 없다.



- 주민발의로 전개되든, 교육청 정책으로 추진되든 학생인권조례가 현장에서 실질적 영향력과 학교 재구성의 지렛대 구실을 할 수 있으려면, '다른 교육'을 열망하는 이들이 마음 깊이 학생인권조례의 정신과 철학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에게서 실무적인 논의, 힘의 결집 못지않게 이 논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 체벌 금지 정책, 학생인권조례의 등장 이전에도 교사는 행복하지 않았다. 학부모도 행복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많은 이들이 학생인권조례의 제정 이후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에 사로잡혀 변화를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추동해내지 못하고 있다. 여전히 체벌의 불가피성을 논하고, '요즘 애들'을 들먹이고, 시기상조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다. 학생인권 사안을 교육청에서 떨어진 또 다른 '일거리' 정도로 받아들이고, 교사가 개혁 대상이 되었다는 불쾌감을 드러내는 이들도 적지 않다. 현장이 준비되지 않았다는 것은 학생인권정책이

정말 시기상조이기 때문인가, 지속적인 목소리를 외면해온 결과인가? 여기에 대한 냉철한 자기 성찰이 필요하다.

- 사실 머뭇거릴 수 있다는 것은 절박하지 않다는 것이고, 절박하지 않다는 것은 이 운동의 철학을 마음 깊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것은 아닐까? 현장의 준비 없이는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어도 쓸모가 없겠지만, 그렇다고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리자는 말은 안이하다. 학생인권조례가 사회와 교육을 향해 던지는 질문을 여전히 공유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다. 현장이 준비를 갖추면서 조례를 제정하고 준비할 수 있다면 더욱 좋겠지만, 만약 '완전한 준비'와 '조례 이후의 혼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면 선택이 필요하다.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는 개인의 소신과 성향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겠지만, 더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은 '현실의 요청'이다. '학생의 입장'에서 보는 일이다. 마틴 루터 킹이 흑인들의 시민권 주장은 '이해'하지만 '이르다'는 백인들의 주장에 대해 보낸 항변은 무엇이 우리의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하는지를 웅변적으로 보여준다.

“분리의 괴로운 고통을 경험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기다리라’고 말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악랄한 폭도가 여러분의 부모에게 함부로 린치를 가하는 것을 볼 때, 증오로 뚫뚫 뭉친 경찰이 흑인 형제자매를 욕하고 발로 차고 야만스럽게 다루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데도 별조차 받지 않을 때, 번영하는 사회 한가운데서 숨 막히는 가난으로 허덕이는 2천만 흑인들을 볼 때, ‘백인 전용’, ‘유색인종 전용’이 표시된 지긋지긋한 간판을 매일 보면서 수치심을 느낄 때, 백인들이 여러분을 ‘깜둥이’라 부르고 나이에 상관없이 ‘놈’(boy)라고 부를 때 그때 여러분은 우리가 기다리기 어려운 이유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 마틴 루터 킹이 감옥에서 보낸 편지 중

2. 교사의 준비됨 없이 교육개혁은 없다

-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학생인권이 '공식적 언어'로 확인되고 있다. 교육의 식탁에 평등하게 둘러앉아본 적 없는 학생들이 점잖게든, 서툰게든 자신이 인간임을, 권리의 주체임을 선언하고 나설 것이다. 학교의 익숙한 관행에 질문을 던질 것이다. 관행을 고집하는 이들, 예의라는 이름으로 굴종을 강요하는 이들에게 의문을 제기하고 규정의 정당성을 따져 물을 것이다. 그런 소란스러움을 거치지 않고서 어떻게 학교가 변화할 수 있을 것인가?

- 그럼에도 그 소란스러움이 변화를 위한 즐거운 과정이 되기 위해서는 교사들이 이 과정에 적극적 주체로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 게다가 보수진영에서 학생인권조례의 부작용을 과장되게 부풀리고 '사건화'함으로써 진보교육감과 교원노조, 마침내는 진보의 가치 자체를 공격하는 일들이 기획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는 영국의 경험에서도 이미 드러난 바 있다. 이런 어려움을 뚫고 학생인권조례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는 교사들의 협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 된다.

- 이를 위해서는 교사들의 목에 걸려 있는 우려들을 토해내야 하고, 자꾸만 걸려드는 함정이 무엇인지 밝혀내야 한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교권'과 '학생 지도권'이다. 참교육연구소의 의식조사에서도 드러난 바와 같이, 교사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교권 침해'에 대한 의식이 변화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교권 침해의 주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교사의 상당수가 교과부, 교육청, 학교관리자를 지목했다는 사실, 교사 권리 보장을 위해 교육의 자율성과 비민주적 학교운영과 교육행정 개선을 꼽았다는 사실은 중요하다. 그럼에도 다수의 교사들이 이런 문제보다는 학생들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권위를 둘러싼 문제에 더 감정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한다. 사실 교사의 권리를 옥죄는 억압들은 대개 학생인권을 옥죄는 억압들과 연결되어 있다. 최근 민주노동당 가입 또는 후원을 이유로 교사들이 중징계당하는 사안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교사의 정치적 권리를 부정하는 이유는 바로 학생의 정치적 권리가 부정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교사와 학생이 어떻게 같은 통제 그물망 속에 들어가 있는지를 인식하지 않으면 '학생인권'은 교사들이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할 '의무'의 지위를 결코 벗어나기 힘들 것이다.

- 교사의 학생 '지도권'은 학생인권을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할 책무가 있다. 만약 교사의 지도 내용과 방식이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면, 이는 정당한 교권 행사라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물론 교사가 정당한 지도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학생의 공격적(문제적)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 이것은 교사라는 직무를 수행하는 가운데 입을 수 있는 일종의 '산업재해'(노동재해)와 같은 것이 아닐까. 또한 학생의 공격적 행동 이면에는 다양한 맥락과 역사가 숨어 있을 수 있다. 이때는 교사의 권위를 내세워 학생을 제압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학생의 변화를 기다려주고 상처를 어루만져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접근법을 택해야 한다. 그동안 이러한 시스템 마련이 긴급한 교육의 제로 떠오르지 않았던 이유는 그것을 '교사의 학생 지도력 문제'로만 접근해 왔고, 그에 따라 교사들이 체벌이나 강압적 교육 수단을 통한 순간적 행동 통제에만 매달리도록 요구받아 왔기 때문이다(직접 매를 들지 않는 교사들도 학생부장에게 학생을 인계하는 방식을 택해 왔다). 그래서 학생이 문제행동을 일으켰을 때 그 행동을 제압하지 못하는 교사는 '무능 교사'라는 낙인까지 부여받아야 했다. 문제의 뿌리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학생에게 보장되어야 할 인권 기준이 명확해야 하고, 교사가 직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요소들을 솔직하게 드러내야 하고 그 요구가 시스템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 좀더 근본적으로는 교사의 '학생 지도권'이 과연 권리인지 아니면 교사에게 부여된 '의무'인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지난해 부천의 한 초등학교 교장이 학생들 성적이 오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교사를 체벌한 사건이나 올 9월초 한 사립학교 교장이 학생들 복장 단속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교사를 체벌한 사건에서도 볼 수 있듯이, 학생 지도권은 교사에게 부여된 의무인 측면이 더 강하다. 학생인권은 학생지도권이라는 미명 하에 교사에게 부여된 과중한 '학생 통제 업무'를 줄이는 것 아닌가.

- 학생인권은 학생을 가혹하게 다루지 말자, 인격적으로 대우하자는 수준을 넘어, 교육의 원칙과 철학을 다시 구성하는 일이기도 하다. 결국 중요한 것은 '학생과 교사가 어떻게 만날 것인가', '어떤 질문을 공유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그럼에도 최근 서울의 체벌금지 정책 이후 빚어지는 모양새를 보면 교육의 기본 철학, 만남과 소통의 조건은 건드리지 않은 채로 문제가 된 '행위양식'만을 '금지'하는 소극적인 방식으로 문제에 접근하는 경우가 많아 우려된다.

3. 학생인권조례시대, 시민사회의 역할

- 학생 당사자들의 문제제기와 참여, 교사의 주체적 실천, 학부모의 협력이라는 세 바퀴가 돌아서 잘 굴러갈 수 있다면 시민사회의 역할은 사실 크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에게 이 세 바퀴가 충분히 갖추어져 있지 않다.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들어본 적도 없다는 학생이 여전히 많고, 다수의 교사들은 여전히 불편한 마음을 갖고 한발 뒤로 뺄 구실을 찾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무엇보다 일반 학부모들의 의식이 얼마나 변화했는지는 확인조차 되지 않고 있다. 서울에서 주민발의로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이유도, 그러한 접근방식이 가진 유효한 지점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할 것이다. 학생인권에 관해 제대로 된 질문을 건네는 것, 학생인권에 관해 제기되는 우려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투명하게 보여주는 것, 학교가 '공동체'라고 이야기되지만 그 안에 얼마나 많은 가치의 충돌과 권력의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밝혀내는 것 등 학교라는 공간에서 한발 떨어져 있기 때문에 가능한 '성찰의 지점'들을 알려내는 것이 시민사회의 역할이다. 오늘과 같은 토론 자리를 만들어내는 것, 학생인권과 교육의 문제가 학생·교사·학부모만의 문제가 아니라 왜 시민들이 함께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문제인지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하다.

- 또 하나, 학생인권의 현실을 드러낼 수 있는 사회적 장면, 미성숙론으로 대표되는 학생을 바라보는 기존의 인식틀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회적 장면을 만들어내는 일도 중요하다. 이를테면, 교육청 차원에서 '학생 참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요구하고, 학생들이 자기 삶과 교육에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장면들을 보여준다면, 학생인권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1. 인사말

- 초대해 주셔서 감사.
- 아는 일들도 있는데 편안하게 얘기 나왔으면 좋겠다.
- 오늘 얘기할 주제, 학생인권조례. 최근 아시다시피 논란이 많음. 경기도에서 통과된 이후, 강원, 광주, 서울, 전북, 전남 등 속칭 만주, 진보라고 불리는 교육감들이 이 학생인권조례를 준비 중에 있고, 이를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 단체든 혹은 언론이던 치열하게 공방을 벌이고 있음. 오늘은 이 얘기를 해보고자 함.

2. 본론-① (5분~6분)

- 사실 학생인권조례, 이를 둘러싼 학생인권, 학생의 인권에 대해 논의를 하기 앞서, 먼저 인권에 대한 간단한 얘기를 해 봐야 할 것 같음. 인권, 누구든 이미 알고 있는 얘기.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그렇다. '사람이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권리'(사회적 지위 등)를 우리는 인권이라 얘기할 수 있음.
- 처음 인권이 역사적으로 의미 있게 나타났던 것, 흔히 우리는 프랑스 혁명을 꼽음. 1789년. 봉건제, 절대주의왕정 하에서 신분이 불평등했음. 그러나 부르주아, 농민, 노동자가 세상을 바꿈. 그들은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을 발표. "인간은 권리에 있어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나 생존한다." 누구나 인권이 있다고 선언한 것. 그러나 모두 권리를 누렸었나? 그러지 않았음. 선언은 거짓말, 속칭 구라였음. 누구였었나? 돈 많은 남성, 남성 그리고 백인. 선거권만 보더라도.
- 감히 저는 단정하지만 바로 지금까지 인간의 역사, 인권의 역사는 바로 확장의 역사였음. 소수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로 부터 점차 인권이 확대되어왔음. 남성에서 여성으로, 백인에서 흑인으로, 돈 많은 사람에서부터 가난한, 노동자로부터. 그것이 흐름이었음. 지난한 과정, 저항과 피를 흘리는 희생 속에서 인권을 누릴 수 있는, 즉 인간대접을 받겠다는 경제들이 확장되어온 것임. 최근 학생, 즉 아동, 청소년의 인권에 대한 논의 역시 이 확장의 과정 중에 하나임. 사실 한국사회의 논의 서구에 비해서는 늦음. 프랑스를 비롯해 68혁명(선거권 논의까지)에 시작되었으나 우리는? 이제야 논의가 이어지게 된 것임.

2. 본론-② (5~6분)

- 아동, 청소년 인권에 대한 논의의 시작은 산업혁명 때부터. (흔히 떠오르는 그림) 아시다시피 당시 아동노동의 문제. 남녀,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열악한 노동환경, 과중한 노동시간(15시간 이상), 열악한 저임금(하루 봉급이 하루 생활을 이루지 못할 정도). 그 환경 속 당연히 인간의 기본적 삶을 이루지 못하였음. 나폴레옹이 전쟁을 하던 때 평균 수명 28세. 그러나 박차를 가할 때 20세로 내려갈 정도로.
- 이 현실 속 아동을 어떻게 죽음으로 몰아넣어야 했나라는 박애주의적 시선에서부터 사회체계가 존속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걱정, 즉 세련된 자본주의적 시선들은 결국 아동노동의 철폐, 노동할 시간에서 교육에 대한 보장(학교의 설립과 더불어) 등으로 이어지게 된 것임. 아동의 생명, 복지 등을 고려. 보호주의의 시작.
- 그러나 보호주의적인 시각의 한계들은 있었음. 뭐? 아동, 청소년을 한 주제로 인정하지 않는 것. 보호해야 할 대상 하나의 대상으로만. 특히 길러내야 한다는(어떤 사회적 질서, 예컨대 자본주의적 질서로의 편입을 위해) 목적 내에서 아동은 하나의 훈육의 대상이었음. 학교

면 가정이던. 아동, 청소년의 자기 의사나 이런 것은 고려되지 못했음.

- 여러분 아시다시피 68년 혁명은 하나의 기점. 저항이 폭발되는 가운데 청소년들 역시 터져나왔음. 특히 자기결정권을 중심으로 청소년들이 저항을 시작함. 당시의 요구를 살펴보면...

- (1) 공장법이나 아동보호법과 같은 법률은 우리를 착취로부터 보호해주기는 하지만, 우리의 지위를 향상시키는 데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는다. 법률 역시 우리가 '부모 아니면 국가, 즉 누군가의 재산'이라는 관점에 기초해 있다.
- (2) 학교에 가지 않을 권리: 의무교육은 우리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학교생활은 수감생활과 다름없다.
- (3) 교육에서의 민주주의에 대한 권리: 학교운영에 학생이 의사를 표현하거나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보장해야 하며, 나아가 학교규율의 제정과 커리큘럼의 결정에까지 학생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 (4) 결사의 권리: 학생에게는 차별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조직을 결성하거나 조직에 가입하고 동맹휴업과 같은 정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 (5) 적법절차에 대한 권리: 학교에서도 학생의 시민적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며, 학생들이 두려움 없이 학교나 교사에 대한 불만을 제기할 수 있고 그러한 진정은 신중하게 다루어야 한다. 특히 교장이나 교사에게 부정할 수 없는 권위를 부여하는 '부모대위권(친권이 양론)'은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
- (6) 용모를 통한 자기표현의 권리: 부모에게 교복 착용의 동의서를 받아내는 일은 '은화한 형식의 갈취'이며, 학생 자신이 서명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
- (7) 표현의 자유: 교지, 동아리, 학회 활동 등에 대한 자의적인 검열을 폐지하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하며, 기숙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적인 편지에 대한 검열도 폐지되어야 한다.
- (8) 차별의 폐지: 차별은 우리의 존엄성을 침해하고 모욕하는 일이므로 폐지되어야 한다.
- (9) 신앙 활동의 자유: 우리 자신의 양심에 반하는 종교 교육이나 예배는 거부되어야 하며, 학교뿐 아니라 부모에 의한 특정 종교의 강요도 거부되어야 한다. 나아가 종교적·정치적 이데올로기의 주입으로부터도 자유로울 수 있어야 한다.
- (10) 지식에 자유롭게 접근할 권리: 우리는 모든 지식과 비밀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여기에는 성(性), 사회에서 폭력이 수행해 온 역할, 술이나 담배 등에 관한 지식도 포함된다.

- 전환. 보호주의에서 청소년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선거권이 낮춰지는 흐름에
도 큰 영향. 아동권리협약 등 도 이 흐름에 이어 나타났던 것임.

3. 본론-③ (5~6분)

- 앞서 언급했지만 한국사회의 경우, 아동, 청소년의 인권에 대한 논의 작게 잡으면 15년 전
(최우주, 야간자율학습을 고발하는 헌법소원 사건), 길게 잡으면 20년 전(참교육운동)부터 논
의가 촉발되기 시작했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아동권리협약이 우리나라에서 인준된 것
은 91년도. 그러나 아무런 문제의식이나 사회적 반향없이 통과_-)

- 특히 억압적인 규율을 지닌 학교로부터 논의가 촉발. 학생자치의 문제(간선제, 권한도 예
산도 없는), 체벌-두발규정 등의 문제(자기의 신체통제, 개성을 빼앗는. 결국 그 사람의 정신
적 지배를 가져오는) 등. 사실 학교는 그 사회의 현실을 가장 잘 보여주는 거울임. 일제강점
기부터 군사독재 시절을 거슬러온 한국사회의 현실을 반영해주고 있는 모습임. 학교가 군대
같다는 것은 괜히 나온 말이 아닌 것임. (그러나 문제는 학교가 그 사회의 현실뿐만 아니라
미래를 만들기 때문에, 보여주기 때문에 더 큰 문제임.)

- 앞서 언급했지만 이 인권에 대한 논의는 무엇보다 당사자들의 주장으로부터 시작. 억압적
환경 속에 있는 학생들이 주장하기 시작한 것. 학생회적선제 쟁취, 노컷운동 등. 실로 다양
한 저항이 있어왔음. 적극적 저항외에 소극적인 저항 역시. 대표적인 것이 자살. 그들 자신
의 삶을 포기하는 것과 더불어 사회에 메시지를 던진 것임.(유서)

- 어쨌든 자신들의 현실개선, 인권보장의 요구를 하면서 이를 법적 제도화(좀 더 규정력 있
도록)를 추진하기 시작했다. 최초의 시도는 2006년 민주노동당 최순영의원이 발의한 일명
학생인권법, 초중등교육기본법 개정안이 그것이었음. 내용은 학생인권조례 처럼 다양했음.
사실 핵심적 내용이 함께 들어갔음. 그러나 한나라당의 적극적 반대, 민주당의 소극적 반대
속에 상징적 조항(학교의 장과 이사장은 헌법, 국제 협약 등에서 규정된 학생의 권리, 인권
등을 보장해야 한다 정도?)로 통과.

- 이후, 이 같은 흐름이 계속되어 학생인권을 지역적으로 보장하는 의미의 학생인권조례가
추진된 것임. 시작은 광주에서부터. 특히 민주진보교육감의 탄생 속에 공약이 함께 들어갔
고, 경기도에서는 통과가 된 것임. 이후 서울에서는 주민발의(주민들의 서명으로 발의하게
되는) 등으로 각 지역에서 추진이 준비 중에 있음.

4. 본론-④ (10분)

- 학생인권조례의 내용. 여기서 다 살펴볼 수는 없음. 그러나 실로 다양하게 담겨져 있음.
그것은 인권이란 자체가 갖고 있는 특성 때문. 앞서 언급했지만 사람이 살기위해 필요한 것
들은 굉장히 많음. (인간답게 살기위한 다는 것 자체가 애매하지만 한편으론 무궁무진한 가
능성을 갖고 있기 때문임.) 그것은 또한 시대에 따라 달라짐. 기술의 발전? 혹은 인간이 인
식하지 못했다가 어떤 요구로 계속 확장되어옴. (편란드, 인터넷을 기본권으로.)

- 간단하게 내용 살펴보자면 폭력으로부터의 보호(체벌, 집단괴롭힘 등), 사생활의 보장(소지
품검사 최소화, 일기장 검사 금지, 휴대전화 사용, 이통포 부착 금지 및 개인적 정보 보장)
개성 실현의 보장(두발 및 용의복장 자유), 복지(빈곤 등) 및 휴식권(야간자율학습 강요 금
지), 양심 및 사상의 자유(경기도에서는 후퇴. 서울에서는 이를 넘어 결사 및 정치활동의 자
유, 집회시위의 자유 포함)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있을 권리(휴게실 및 탈의실 설치, 급
식안전보장), 자치활동의 보장(학생회, 동아리 활동 보장, 예산권 등 보장), 차별받지 않을 권

리(성별, 성적지향, 성적 등), 정책결정에 참여 및 의사를 개진할 수 있는 권리(교육청 내 학
생참여 보장), 인권교육 실시 및 계획운영, 학생권리침해에 대해 조사·권고 내릴 수 있는
학생인권옹호관계 도입 등 실로 다양함. 내용이 방대하기에 여기서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기
에는 부적절함. 한 번 내용을 확인하시길 바람.

- 이를 두고, 논란이 많음. 보수진영을 필두로 한편, 진보적인 의식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
도. 특히 교권추락, 학교혼란, 학교가 정치판이 될 것이라는 의견들. 이후 얘기나누면서 자연
스럽게 얘기 나올 것이라 생각하지만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자면 어떤 보수세력들이 집요하
게 주장하는 것은 간단하게 말하자면 자신들의 기득권이 없어지기 때문임. 학교 내에 어떠
한 위계적 권력관계가 있었고, 이를 누려왔던 것임. 그것이 없어진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발동한 것임. 특히 자신의 인권을 느껴왔던 사람들 인권이 침해되고 있는 사회로 나간다면
가만히 침묵하지는 않을 것임. 자신들의 질서가 파괴될 것이라는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임.
이들이 반대하는 것은 당연한 것임.(그전에 하나의 인격체로 인정한다는 것은 꿈도 꾸지 못
하는 것이고.)

- 또 교권을 두고, 저는 교권의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사람을 때리면서 까지 가르쳐
야할 지식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봄. 교권역시도 마찬가지임. 지금의 교권은 왜곡된 지점들이
있다고 생각함. 지금 누군가가 교권과 학생인권이 대립된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음. 민노당
정치후원금 관련 탄압이 그것임. 학생들을 미성숙하게 보기 때문에 교사의 정치활동을 제약
하는 것임.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면서까지 가르치라는 상부의 부당한 지시에 대해 거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진정한 교권이 아닐까라고 생각함. 교사들, 특히 전교조 교사들이 이 같
은 논의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쉽지가 않음.

5. 결론 (10분)

-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는 내년 3월부터 공식 발효가 될 예정. 쉽지가 않음. 보수언론에서 계
속 뒤집기 시도. 그리고 교과부에서도 최근 무력화시도가 준비 중에 있음. 계속 지켜봐야 할
것임. 그럼에도 한 가지 말씀드리면 쉽지가 않을 것임. 예전과 상황이 다름.

- 하나 더 확실한 것은 이 학생인권변화는 교육의 변화가 오는 계기가 될 것임. 학생인권은
곧 교육의 패러다임이 바뀐다는 것임. 학생관의 변화, 이는 교육의 변화로. 물적토대(예컨대
학급당 학생수 변할 수 밖에 없음.)에서부터 지식 중심의 교육에서 생활, 인간-공동체 교육
으로의 전환. 한편 입시교육의 층들 속에 새로운 교육으로의 전환으로. 이 흐름들에 대해 함
께 얘기해보자.

* 김희시위.
무성교육.

보안권.
무기권.
통제권.